

모니터링 리포트 vol. 47

Contents

- 02 편집자 편지
- 04 포커스
- 05 22년 1월~5월 온라인 플랫폼 장애 혐오표현 모니터링 수행
손영수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 16 2022년 2분기 및 3분기 모니터링 수행
손영수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 29 민선 7기 지방정부 장애인 예산분석
- 광역단체 장애인예산 비율 평균 3.4%에 그쳐
- 서울특별시 장애인 1인당 예산 강남구 1위, 영등포구 꼴찌
고영란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 42 2022년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분석
-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비율 1.07%에 그쳐
- 5년간 장애인예산 92.9% 증가
- 복지지출 OECD 38개국 중 하위권에 머물러
고영란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 53 2022 장애인 관광환경모니터링 분석 보고
- 보조기기 웹 접근성 저하, 장애인 없는 정보 접근성
한지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주임연구원
- 61 언론 및 방송모니터링 3~6월 분석 결과
- 소수보다 다수, 여전한 미디어의 이슈바라기
한지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주임연구원
- 70 이슈포착
장애인권리협약 2·3차 국가보고서 심의와 시민사회 대응
- 90 영화평
투쟁하는 현실, 들여다보는 영화
또는
예술가 발달장애인들의 지나온 시간
서동일 감독 <니얼굴>, 정관조 감독 <녹턴>
- 96 포럼은 지금

발행인 이권희
편집인 김용구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이앤씨드림타워 1303호 (우)07255
Tel 02) 833-3097
Fax 02) 833-3039
홈페이지 www.ableinfo.co.kr
이메일 ablecenter@hanmail.net
디자인 한빛인쇄

■ 편집자 편지

기후변화와 장애인 인권

재난이 유독 빈곤층에 가혹하다고 하지요. 이 시대의 최대 재난 이슈인 COVID-19,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염병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행했던 코호트 격리와 근래 폭우로 인한 참사 희생자들의 면면이 그렇습니다. 아일랜드의 첫 여성 대통령(1990-1997)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표(1997-2002)를 역임한 메리 로빈슨(Marry Therese Winifred Robinson)은 “기후변화는 21세기 인권의 가장 큰 위협”이라 말했습니다. 현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표인 미첼 바첼레트(Michelle Bachele)도 인권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로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상실, 공해와 독성물질을 꼽았을 정도입니다.

COVID-19와 기후변화의 공통점은 숲의 파괴에서 기인합니다. 사람과 동물 모두를 숙주 삼아 살아갈 수 있는 COVID-19 바이러스도 실상 그들의 삶의 터전인 숲을 인간이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침범해 발생했습니다. 숲의 파괴로 숙주인 동물들이 없어지자 사람에게 옮겨와 기생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COVID-19 재난의 서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숲을 보호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뉴스는 끊임없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중심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 초점을 맞춘 정책,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인류 구성원들의 인식개선 노력과 실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이 요구됩니다.

세 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첫 번째 전략이 부재하거나 미흡해 빈곤층의 참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롭습니다. 기후변화 등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 시 장애 유형과 성, 나이,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하고 정책 수립과 이행, 평가 전 과정에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너무나 당연하고 고리타분한 말은 왜 귓가에만 머물고 마음과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모니터링은 그냥 흉내였나 싶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일찍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은 환경(자연재해, COVID-19, 기후변화, 대기오염 등), 사회(인권, 노동, 공정경쟁, 소비자 권리 등), 거버넌스(의사결정과 참여 등) 모두에서 취약합니다. 장애인이 처한 현실을 국가에 각인시키고, 당사자 관점에서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조치를 요구하는 일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봄여름 통합본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될 이번 모니터링리포트 내용도 정책 환류 노력의 관점에서 접근해보시길 권합니다.

〈이슈포착〉에서는 8월에 예정되어 있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심의와 시민사회 대응에 관한 내용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가 여러분께 전달될 즈음에는 시민사회의 제네바 현지 활동에 대한 정보도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포커스〉에는 국회 장애인 정책 의정활동, 온라인 혐오표현, 올해 장애인 정책 예산, 10대 주요 일간지의 장애관련 기사와 방송매체 프로그램의 장애관련 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모니터링 리포트를 받아보실 즈음에는 각각의 보고서 완성 본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모니터링 리포트가 봄여름 통합본으로 진행되면서 좋은 점 하나가 생겼습니다. 독자 분들이 〈영화평〉에서 두 개의 영화를 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발달장애인의 모습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다양하게 그려지면서, 또는 긍정적이고 일상적으로 그려지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도 편견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듯합니다. 류미례 감독님의 영화 〈니얼굴〉과 〈녹턴〉을 매개로 독자 여러분과 무엇을 나누고 싶어 하는 지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김 용 구

포커스

+



- 22년 1월~5월 온라인 플랫폼 장애 혐오표현 모니터링 수행
손영수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 2022년 2분기 및 3분기 모니터링 수행
손영수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 민선 7기 지방정부 장애인 예산분석
- 광역단체 장애인예산 비율 평균 3.4%에 그쳐
- 서울특별시 장애인 1인당 예산 강남구 1위, 영등포구 꼴찌
고영란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 2022년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분석
-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비율 1.07%에 그쳐
- 5년간 장애인예산 92.9% 증가
- 복지지출 OECD 38개국 중 하위권에 머물러
고영란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 2022 장애인 관광환경모니터링 분석 보고
- 보조기기 웹 접근성 저하, 장애인 없는 정보 접근성
한지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주임연구원
- 언론 및 방송모니터링 3~6월 분석 결과
- 소수보다 다수, 여전한 미디어의 이슈바라기
한지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주임연구원

22년 1월~5월 온라인 플랫폼 장애 혐오표현 모니터링 수행

손영수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모니터링 센터에서는 22년 신규 사업으로 온라인 플랫폼 상 장애 혐오표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이에 대한 취지 및 배경은 아래와 같다.

■ 취지 및 배경

- ◎ 포털사이트 및 소셜네트워크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이 의한 무분별한 장애 혐오 표현이 장애 이미지 왜곡, 편견 및 차별 고착화로 이어지고 있어, 장애 왜곡 표현 모니터링 제도화에 대한 장애인 정책욕구 증가
- ◎ 일반시민들은 소수자 집단 중 장애에 대한 혐오표현을 혐오표현에 가장 가깝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적 소수자 중 장애인이 온라인 상에 혐오표현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음

1. 모니터링 개요

1-1. 모니터링 배경

지난해 4월 장애인 관계자들은 장애혐오표현에 속하는 발언을 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차별구제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로 올해 4월 법원은 혐오를 공고화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올해 4월에는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등을 계기로 장애인 혐오표현 논란이 적지 않은 가운데 시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한 장애인 유튜버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간 경우도 있었다. 해당 유튜버는 시위와 관련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장애를 비하하거나 부모님을 욕하는 등 도 넘는 악성댓글을 단 사람을 결국 고소하였다.¹⁾ 이처럼 장애혐오표현에 비롯되는 심각한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혐오표현은 “어떤 개인·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혐오하거나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²⁾ 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에 비추어 장애혐오 표현은 장애인에게 부정적인 편견을 드러내거나 혐오스러운 것에 비유, 욕설로 위협하는 행위, 차별과 폭력을 널리 알리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혐오표현의 대상자는 차별을 경험하게 되며 스스로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좌절감과 자존감에 상처를 입어 의기소침해질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능력이나 환경 때문이 아닌 장애 때문에 상처 받는 것에 큰 패배감을 느낄 수 있다.

1) '병어러, 절름발이'...장애인 혐오표현 "차별은 쉽지 않아", KBS, 2022년 4월 25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48172>

2)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6년 12월

혐오표현이 급속도로 확산된 원인 중 하나로 인터넷 이용의 급격한 증가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 혐오표현 문제를 논할 때, 항상 온라인 혐오표현이 특별한 이슈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한국은 인터넷 인프라가 매우 발달해 있는 국가이므로 이러한 인터넷 기반이 혐오표현의 급격한 전파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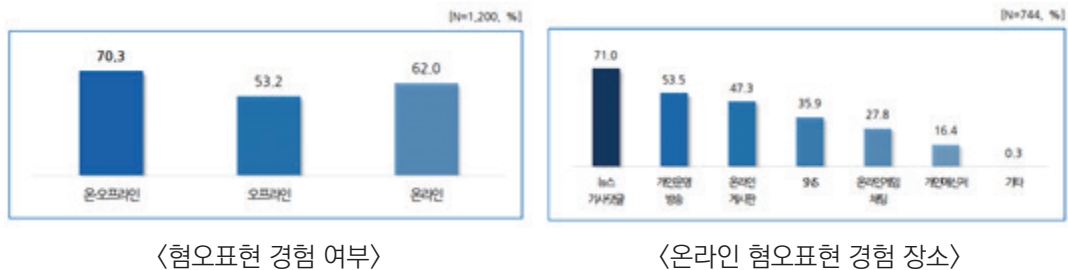
이를 반영하듯 국가인권위원회는 '네티즌 혐오표현 인식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이 온라인상 혐오표현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들과 함께 센터에서는 올해 온라인 플랫폼 상의 혐오표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전반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그 목적이 있다.

1-2. 모니터링 대상 선정 및 기간

앞선 인권위의 온라인혐오표현 인식조사⁴⁾에 따르면 혐오표현 경험여부와 관련하여 오프라인(53.2%)보다 온라인(62%)에서 혐오표현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고 밝혔고,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 장소로는 뉴스기사 댓글(71.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온라인 혐오표현의 모니터링 대상은 뉴스기사 댓글로 선정하였으며, 이러한 뉴스기사 댓글은 네이버(NAVER)와 다음(Daum)이 국내 최대 뉴스 소비 채널로 기능⁵⁾하고 있기에 모니터링 대상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선정하였다.



〈혐오표현 경험 여부〉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 장소〉

3) 혐오표현이 표현의 자유가 아닌 이유, 오마이뉴스, 2016년 3월 25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3629)
 4) 온라인혐오표현 인식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21년 5월
 5) 네이버, 다음의 문제인 정부 지지율 여론조사 뉴스댓글에 나타난 댓글 여론과 적대적 언어분석, 2020년 6월 12일

사업 수행 전, 이를 바탕으로 약 1주일간 사전테스트를 진행하였다. 단원별로 테스트에 필요한 대상과 일정을 분배하였고, 인터넷 뉴스 기사 및 댓글 등을 수집한 결과, 하루에 발생하는 뉴스 기사 수와 기사에 따른 댓글 수가 너무 방대하여⁶⁾,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대상 등의 조정이 불가피하였다.

우선 모니터링 대상은 하나의 플랫폼(다음⁷⁾)의 사회면 뉴스기사로 한정하였고, 발체 기간을 크게 장애인 관련 이슈가 있는 기간(1월~3월, 22일)과 단원이 직접 모니터링 할 날짜를 선정한 기간(4월~5월, 21일)을 합하여 총 43일 간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앞선 1월에서 3월간의 장애 관련 이슈 일정은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 일정을 참고하였다.

이러한 장애 관련 이슈가 있던 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이유는 장애관련 뉴스 기사의 빈도가 그렇지 않은 날보다 높을 것이며, 댓글의 표현 정도 등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전체 세부적인 모니터링 대상 및 기간의 선정은 아래와 같다.

구분	대상	모니터링 대상 기간		일 수
		1월	2월	
뉴스기사 사회면	다음(Daum)	1월	21, 28	2
		2월	3, 4, 7, 9, 10, 11, 14, 15, 16, 21, 22, 23 25	13
		3월	3, 14, 18, 24, 25, 28, 29	7
		4월	4, 6, 8, 10, 12, 14, 18, 19, 20, 21, 22	11
		5월	2, 6, 9, 13, 16, 18, 20, 27, 30, 31	10
		합계		43

2. 모니터링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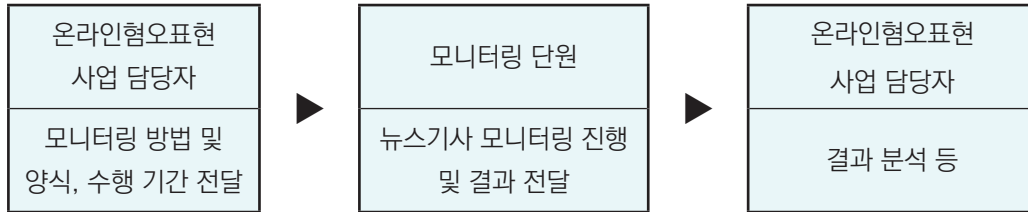
2-1. 모니터링 절차

절차에 앞서 해당 사업은 1월~9월까지 총 5회기로 나누어 진행한다. 해당 리포트에서는 22년 1월~5월(회기는 1회기~3회기)까지의 결과이다.

센터는 각 사업별로 모니터링 단원을 운영 중이며, 단원을 통해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도 마찬가지로 크게 단원 4명이 인터넷 뉴스기사 및 댓글을 수집하고, 담당자가 결과 분석 등을 분담하여 진행한다. 모니터링 단원은 인터넷 뉴스기사의 양에 따라 적절히 분배하였고 단원의 모니터링 시기는 회기마다 상이하게 진행하였다.

6) 1일 발체에 평균적으로 약 5일 소요됨, 22년 2월 8일자, 다음(Daum) 사회면 전체 인터넷 기사 수 1,515건, 전체 댓글 수 14,600건
7) 뉴스 기사 발체의 용이함 등의 단원 의견 반영

〈모니터링 절차〉



2-2.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해당 사업에서의 데이터 수집은 크게 장애관련 뉴스기사와 비장애관련 뉴스 기사를 구분 지어 수집하며, 수집의 기준으로 아래의 장애관련 키워드를 활용한다. 해당 키워드는 센터의 타 사업에서 장애관련 내용을 쉽게 검색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Key Word〉

장애, 편의, 정신, 약자, 특수, 저상(버스), 특수,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즉, 장애와 관련되는 단어로 해당 사업에서는 장애관련 뉴스 기사를 구분 짓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뉴스 기사 제목에 해당 키워드가 있으면 장애관련 뉴스 기사로 수집되는 것이고, 없으면, 비장애관련 뉴스 기사로 수집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장애혐오 등 표현의 댓글 수집은 아래 표('장애(인) 관련 언론보도 모니터링 지침')를 활용한다. 해당 표는 언론보도 상 장애 비하 표현을 수집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차용하였다. 쉽게 말해 댓글 내용 중 '장애(인) 비하 용어'가 포함되면 해당 댓글은 혐오표현으로 수집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욕설에 준하는 등의 표현도 포함되어 수집된다.

장애인 비하 용어	올바른 표현
정상인(장애인의 반대말로 쓰일 경우)	비장애인
애자, 장애자, 불구자, 지체부자유자, 병신, 불구, 폐질자	장애인
앉은뱅이	지체장애인
절름발이, 절뚝발이, 찢뚝발이, 찢뚝이, 찢따, 반신불수	지체장애인
외다리, 외발이, 외팔이, 곰배팔이	지체장애인
조막손, 육손이	지체장애인
병어리, 귀머거리, 아다다, 말더듬이, 아자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장님, 소경, 애꾸, 봉사, 맹자, 애꾸, 애꾸눈, 외눈박이, 사팔뜨기, 사팔	시각장애인, 저시력장애인

곱추, 곱추, 곱사등이	지체장애인
정신박약아, 정박아, 등신, 도라이, 백치, 바보 천치, 열간이, 멍	지적장애인
미치광이, 정신병자, 미친 사람	정신장애인
땅딸보, 난쟁이	지체장애인(저신장장애)
언청이, 언청선님, 껌보	언어장애인
배냇병신	선천성 장애인
혹부리	안면장애인
문둥이, 나병환자	한센인

모니터링 결과 분석은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뉴스 기사의 댓글에서 나타나는 장애혐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함으로 크게 3가지로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전체 기사 및 기사에 따른 댓글 현황을 제시하고 그 중 장애 혐오 표현의 비중을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장애키워드를 통해 장애 관련 기사와 비 장애 관련 기사를 구분 짓고, 기사 간 장애혐오 등 표현의 정도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혐오 표현 댓글의 유형분석을 크게 3가지로 진행하고자 한다.

3. 모니터링 결과

3-1. 일반 현황

분류 분류	인터넷 뉴스 기사 현황				댓글 현황	
	전체 인터넷 뉴스 기사 수	댓글 有 기사 수	장애관련 기사 수	장애혐오 등 표현 기사 수	전체 댓글 수	장애혐오 등 표현 댓글 수
1월~5월	289,134	12,750	2,193	240	64,196	506

1. 전체 모니터링 뉴스 기사 수 : 모니터링을 한 전체 뉴스 기사 수
 2. 댓글 有 기사 수 : 모니터링을 한 전체 뉴스 기사 중 댓글이 1개 이상 있는 기사 수
 3. 장애관련 기사 수 : 기사의 내용이 장애와 관련이 있는 기사 수
- * 기사 제목이 장애와 관련 있는 검색어가 포함될 경우
4. 장애혐오 등 표현 기사 수
: 전체 모니터링 뉴스 기사 중 장애혐오 등에 해당하는 댓글을 포함하는 기사 수

모니터링 기간 동안의 다음(Daum) 사회면의 인터넷 뉴스기사 수는 총 289,134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댓글이 1건 이상이라도 있었던 기사 수는 12,750건으로 기사 20건 당 1건 미만의 빈도(4.4%)를 보였다. 또한 장애관련 기사는 전체 2,193건(0.75%)이며, 장애혐오 표현 등의 댓글이 있었던 기사 수는 240(0.083%)건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댓글 현황을 살펴보면 모니터링 기간 동안 기사에 따른 댓글 수는 전체 529,756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장애혐오 표현 등의 댓글 수는 506건(0.095%)으로 파악되었다.

3-2. 장애관련 기사 VS 비 장애관련 기사 간 장애혐오 등 표현 비교

3-2-1. 장애관련 뉴스 기사 내 장애 혐오 등 표현

분류	전체 장애혐오 등 표현 기사 수	장애관련 기사 수	비 장애관련 기사 수	장애관련 기사 댓글 현황	
				전체 댓글 수	장애혐오 등 표현 댓글 수
1월~5월	240	165	75	15,707	383

장애 혐오 등 표현의 댓글이 있는 전체 기사 수는 240건이며, 이 중 장애관련 기사는 165건이다. 장애관련 기사 165건에 달린 전체 댓글 수는 15,707건이며, 이 중 장애혐오 등 표현의 댓글은 383건으로 집계되었다. 즉, 전체 장애혐오 등 표현 기사 중 장애관련 기사는 10건 중 6건 이상(68.75%)에 해당되며, 장애 관련 기사 댓글 중 40건 중 1건(2.43%)이 장애혐오 등 표현의 댓글인 것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장애 혐오 표현 등 댓글이 달린 장애관련 기사 165건의 각각의 내용 또는 주제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 또는 이와 관련 된 사안의 뉴스 등이 92건, 코로나 시국을 포함한 일상생활 속 차별 등 45건, 이동권 관련 18건, 편의점의 장애인 출입 편의시설 설치 관련 기사 2건,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관련 기사 1건 등으로 나타났다.

3-2-2. 비 장애관련 뉴스 기사 내 장애 혐오 등 표현

분류	전체 장애혐오 등 표현 기사 수	장애관련 뉴스 기사 수	비 장애관련 뉴스 기사 수	비 장애관련 기사 댓글 현황	
				전체 댓글 수	장애혐오 등 표현 댓글 수
1월~5월	240	165	75	48,489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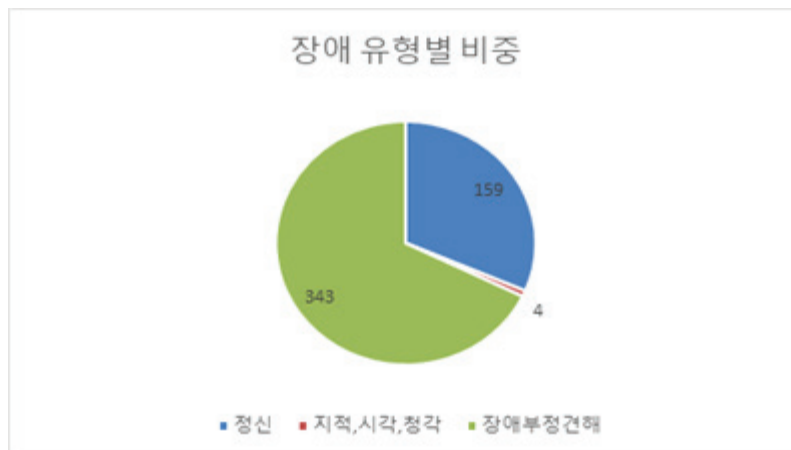
장애 혐오 등 표현의 댓글이 있는 전체 기사 수는 240건이며, 이 중 비 장애관련 기사는 75건이다. 비 장애관련 기사 75건에 달린 전체 댓글 수는 48,489건이며, 이 중 장애혐오 등 표현의 댓글은 123건으로 집계되었다. 즉, 전체 장애혐오 등 표현 기사 중 비 장애관련 기사는 10건 중 3건(31.25%)에 해당되며, 비 장애 관련 기사 댓글 400건 중 약 1건(0.25%) 정도만이 장애혐오 등 표현의 댓글인 것을 알 수 있다.

간략히 앞선 2가지의 비교군 분석을 통해 비장애 관련 기사보다 장애관련 기사에서 장애혐오 등 표현의 댓글 정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3. 장애혐오 등 표현 댓글 유형 분석

3-2-1. 장애 유형별

수집 된 장애혐오 등 표현의 댓글을 '장애(인) 관련 언론보도 모니터링 지침'을 통해 장애 유형 분석을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댓글 내용 중 '병어리' 등의 표현이 있을 경우는 올바른 표현에 해당하는 '청각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짹추' 등의 표현은 '지체장애인'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장애 유형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애부정견해'로 따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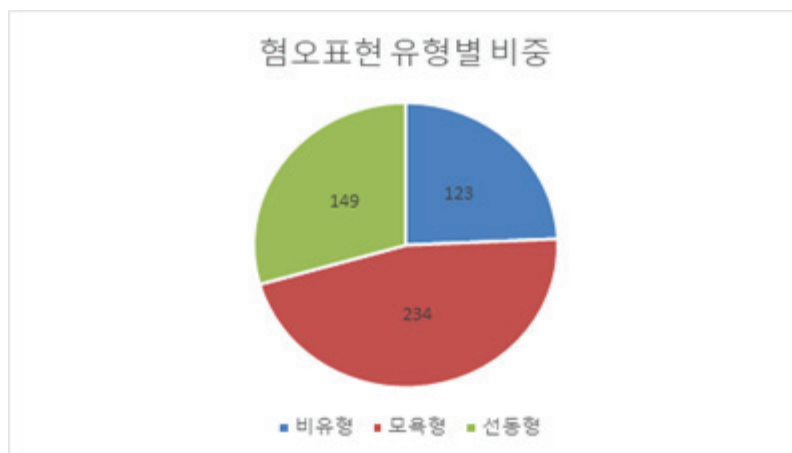
그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 유형에 속하는 표현은 전체 506건 중 163건 이었다. 전체 장애 혐오표현 등은 10건 중 3건 이상(32.2%)에서 장애 유형을 포함하는 표현이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신장애 159건, 지적 2건, 시각 1건, 청각 1건씩 나타났는데 장애 유형 분류는 거의 대부분이 정신 장애(97.5%)가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뉴스 기사의 주제 및 대상을 비하, 부정, 폄하 등의 표현함에 있어 예를 들어 댓글에 '정신 병자네'로 표현 한

것이다. 그 외 ‘정신이 애자’, ‘정신이상자’, ‘정신적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등의 표현도 있었다. 또한 ‘문신병자’와 같이 부정적인 지난 정권의 견해와 혐오표현을 합성어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다음으로 지적장애와 관련된 표현들을 살펴보면 지침에 해당되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으나,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인 ‘저능아’와 같은 표현과 ‘인지능력이 없는’이라는 표현 등이 있었다.

나머지 부정적인 견해들을 살펴보면, 장애가 특권의식에서 비롯됨을 표현하는 ‘장애가 벼슬이냐’ 식의 비꼬는 표현이 가장 많았다. 또한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쓰레기’, ‘깡패’, ‘양아치’와 같이 욕설에 준하는 표현이 다음으로 많았으며, ‘장애인 + 어린이’의 합성어인 ‘애린이’, 장애인은 정부의 지원예산과 관련된 부정적인 표현 ‘세금충’, ‘징징이’인 다수 있었다. 무엇보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기사와 관련된 댓글에서는 시위 행위에 대해서 ‘테러’, 시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테러리스트’라는 표현하거나, 시위 말고 ‘지뢰제거 봉사를 해라’라는 등 심각한 수준의 표현들이 다수 보였다.

3-2-2. 혐오표현 유형별

전체 댓글에서 나타나는 장애혐오 등 표현을 유형별로 ①비유형, ② 모욕형, ③ 선동형으로 나누었다. 각각의 유형은 비유형은 비장애관련 기사의 댓글이 대상이고, 모욕형과 선동형은 장애관련 기사의 댓글이 대상이다. 이에 결과는 각각 비유형 123건, 모욕형은 234건, 선동형은 149건으로 수집되었다.(중복 포함)⁸⁾



8) 한 개의 댓글에 모욕형과 선동형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는 각각 1개로 적용, 전체 506개

① 비유형

1. (22.01.21) ‘숙명여고 쌍둥이’ 딸 감형에도 법정서 울부짖은 전 교무부장 父 “양심만은 지켜라” (<https://v.daum.net/v/20220121224313546>)
- 댓글 내용 : ① 정신병자 가족
2. (22.01.21) “흥기 들고 폭행” 정창욱 셰프, 음주운전 이어 폭행·협박 피소 (<https://v.daum.net/v/20220121220602196>)
- 댓글 내용 : ① 에라이 정신병자야, ② 정신병자구나
3. (22.01.28) “양보 안해? 車내려” 도로위 아기엄마 무차별 폭행男 최후 (<https://v.daum.net/v/20220128204948620>)
- 댓글 내용 : ① 정신병자, ② 엄중처벌하라 정신병자

비유형의 구분은 비장애관련 기사에서 나타는 장애혐오 등 표현 댓글 유형을 말하며, 전체 506건 중 123건(24.3%)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비유형은 비난의 대상이 장애와 무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장애 혐오 등의 표현을 쓰는 경우에 해당되며, 위의 예시처럼 비난의 대체재로 ‘정신병자’를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처럼 비유형의 결과를 통해 혐오표현에 장애의 영역이 쉽게 포함되며,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모욕형

1. (22.02.09) 지하철 4·5호선 정상운행..장애인단체 시위 종료(종합) (<https://news.v.daum.net/v/20220209100036031>)
- 댓글 내용 : ① ♪♪♪♪⁹ 풍년이네 감빵에 확 다 쳐놓고 다리 뿐지러라
2. (22.02.09) 장애인단체 시위로 출근길 지하철 5호선 운행 지연 (<https://news.v.daum.net/v/20220209081643717>)
- 댓글 내용 : ① 장애인새끼들 휠체어 부숴버려야 못기어나오지
3. (22.02.12) ‘장애인권리 예산 확보’ 지하철 시위로 4호선 운행 지연 (<https://news.v.daum.net/v/20220211083229933>)
- 댓글 내용 :
① ♪♪♪들은 집구석에 처 박혀 있다가 다른사람들이 출근하고 다녀라 ♪♪♪들아
4. (22.02.09) 장애인단체 사흘 연속 출근길 승하차 시위..지하철 5호선 지연 (<https://news.v.daum.net/v/20220209082322849>)
- 댓글 내용 : ① 세금충
5. (22.05.06) 전장연, 이번엔 尹 따라 용산왔다.. ‘용산 출근길’ 도로 점거 시위 (<https://v.daum.net/v/20220516133710449>)
- 댓글 내용 : ① 욕먹을 짓 하지 말고 봉사 활동으로 이미지 개선으로 접근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지뢰제거봉사 같은.. 어짜피.. 실용적 접근 아닐까요?

모욕형의 구분은 장애관련 기사에서 나타는 장애혐오 등 표현 댓글 유형을 말하며, 전체 댓글 506건 중 234건(46.2%)을 차지하여 혐오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모욕형은 장애인에 대해 모욕, 비하, 멸시, 위협하는 표현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거나, 모욕적인 욕설을 하거나, 동물 등에 비유하여 기피되거나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¹⁰⁾을 뜻한다. 다시 말해 비난의 정도가 불쾌한 정도를 넘어 사회적 천대와 멸시, 소외감 등을 주어 차별을 생산하는 것이다.

③ 선동형

1. (22.02.14) 장애인단체 “선거공보물 이해 쉽게..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하라”
(<https://news.v.daum.net/v/20220214181625939>)
- 댓글 내용 : ① 인지능력이 없는데 뭘 투표권을 행사한다는거냐... 그런식이면 유치원생도 투표권 줘야지
2. (22.02.07) 지하철 3·4호선 정상 운행..장애인 단체 시위 종료(종합)
(<https://v.daum.net/v/20220207092656760>)
- 댓글 내용 : ① 장애인은 비장애인들에게 엄청난 민폐를 주죠. 요구를 또 당연한 걸로 알고 있고. 내가 당신들 손을 잘랐나 발을 잘랐나? 장애를 내가 만들었나? 민폐주지말고 가족선에서 해결해야하는 거 아닌가? 비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을 강요하면서 일말의 미안함이나 고마움도 없고. 이 사람들 콤플렉스 장난아님. 자격지심으로 또 공격적이고 뻔뻔함.
3. (22.02.10) 법원 “편의점에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하라”
(<https://news.v.daum.net/v/20220210150224266>)
- 댓글 내용 : ① 장애인이면 정신병원가라, ② 웃기네. 장애인 밥도 떠먹여주고 화장실도 데려다주고. 장애인들도 낚시할 수있게. 갯바위에도 장애인편의시설해줘라. 아..... 판사야 저기저쪽에 장애인 똥 샐다 . 판사야 퍼뜩 가서 똥 딱아줘라

선동형의 구분은 모욕형과 마찬가지로 장애관련 기사에서 나타는 장애혐오 등 표현 댓글 유형을 말하며, 전체, 댓글 506건 중 149건(29.4%)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선동형은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이용하여 대중들로 하여금 증오심을 고취하고 적대감을 갖도록 유도하여 차별이나 폭력을 부추기거나, 조장·선전·선동하는 것을 뜻한다. 타 유형에 비해 선동형이 더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는 이유는 이러한 표현이 단지 표현에 머물지 않고 실제 차별과 폭력의 ‘행위’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표현은 그 집단에 대한 차별, 적대, 폭력을 넘어 사회 구성원 간 평화로운 공존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에 대한 해악으로 볼 수 있다.¹¹⁾

10) 장애인 혐오, '표현의 자유' 아닌 '차별과 폭력'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20년 9월 25일

11) 서울시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용역 결과보고서, 2020년 12월, 서울특별시

4. 결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댓글 대비 장애혐오 등 표현의 댓글의 비중은 미미한 편이었다. 다만 수집된 댓글 506건을 통해 크게 2가지 주목할 점은 욕설의 대체재로 ‘정신병자’의 표현이 부분별하게 댓글 상에서 나타는 것과 선동형의 혐오표현이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먼저 온라인플랫폼의 모니터링 대상인 다음(Daum)의 댓글 운영정책을 살펴보자면, 17년 7월부터 AI를 통해 모든 댓글의 욕설 및 비속어를 필터링하는 ‘욕설 음표 치환 기능’을 적용하였다. 이후 20년 2월에는 악성 댓글 신고 제재 정책을 한층 강화하는 뉴스 댓글 서비스 및 운영 정책을 개편하였다. 이러한 개편은 기존의 욕설/비속어 뿐 아니라 ‘차별/혐오’에 대한 신고 항목을 신설했다. 이는 욕설이나 비속어를 쓰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악성 댓글의 삭제뿐 아니라 작성자에 대한 제재도 진행함으로써 악성 댓글 작성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있다.¹²⁾ 하지만 이러한 댓글 운영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자’의 표현이 남아 있는 것은 결국 운영 플랫폼의 필터링 기준에 ‘정신병자’와 같은 단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며, 강화된 정책에 따라라도 신고하는 제3자가 없는 것이다. 즉,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상적으로 조금 심한 정도의 단순한 표현으로만 여겨져 운영플랫폼 측에서는 걸러지지 않은 것이고, 이용자는 단어 사용에 거리낌이 없으며, 신고의 필요성 또한 느끼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를 제외하더라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신병자’를 ‘정신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정의하면서 차별 또는 비하의 의미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¹³⁾ 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선동형의 심각성은 지하철 시위관련 기사의 댓글에서 그 특징이 잘 나타나는데, 비난의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은 ‘우리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대상으로 과도한 권리 주장을 하고 있으며, 세금을 축내는 불필요한 존재(세금충)라서 함께 살수 없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 모두 죽어야 한다”이처럼 극단적인 비난이 자연스럽게 전염되듯이 도달되었다. 또한 앞서 ‘행위’로 전환되기에 심각한 해악이 초래된다고 밝혔듯이 실제로 지하철 시위 이후, 시위에 대한 반감을 가진 불특정 다수가 전장연의 홈페이지를 마비시켜 논란이 되었다.¹⁴⁾

이처럼 일상화되고 다양해지는 댓글의 장애 혐오 등 표현을 규제할 수 있도록 운영플랫폼 측의 일종의 ‘필터링 업데이트’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후에는 장애관련 기사를 게재할 때에는 좀 더 면밀한 감시가 이뤄지도록 별도의 운영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¹⁵⁾ 추가적으로 해당 사업은 이러한 업데이트 및 운영 정책 마련을 위한 정보제공의 역할로서 모니터링 결과물을 플랫폼 측 및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12) 카카오, 뉴스 악성 댓글 정책강화... 혐오-차별 댓글 못단다. 2020년 2월 26일, PAX경제TV <http://www.paxetv.com/news/articleView.html?idxno=871037> 뉴스 기사 발체의 용이함 등의 단원 의견 반영

13) 차별표현 바로알기 캠페인 14) 전장연 홈페이지 한때 마비... "욕하고 혐오하는 분들이 다운", 2022년 04월 22일,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2155100004>

15) 혐오표현 발생 원인으로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방관'(85.5%)(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이 혐오표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의 동의 응답이 높은 비율을 보임, 온라인혐오표현 인식

2022년 2분기 및 3분기 모니터링 수행

손영수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의정 모니터링 사업의 일정 상 2분기, 3분기는 올해 전반기에 해당하는 1월부터 6월까지이다. 2분기에 해당하는 3월 9일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3분기에 해당하는 5월 9일에는 20대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다. 이러한 대선 정국 등으로 인해 국회에서는 많은 회의를 소화하지 못하였다. 특히 2분기에는 작년 대비 약 1/5 수준의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장애인 정책 발언 수 또한 8건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과 작년과 비교해 봐도 현저히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21년, 22년 2분기 발언 및 회의 현황 비교〉

분류	의원 발언 현황		회의 현황	
	정책 발언 수	발언 의원 수	모니터링 대상 회의록 수	발언발생 회의록 수
21년 2분기	45	25	229	22
22년 2분기	8	5	52	6

따라서 2분기의 결과는 우수의원 선정의 최저요건(발언 수 20건)을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3분기와 통합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22년 2, 3분기에 해당되는 회의록¹⁾은 국회회의록 시스템 회의별 회의록에 따르면 제393회에서 제397회에 해당되며, 단원 모니터링 기간은 분기별로 상이하다. 모니터링 대상 및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대상	모니터링 대상 기간	단원 모니터링 기간	
	국회 회의록 - 국회 회의록 시스템 내 회의별 회의록	21대 국회 제393회 ~ 제397회 (2022.01.27. ~ 2022.06.01.)	2분기	04.18 ~ 05.20
		3분기	07.06 ~ 07.15	

1) 국회회의록 회의록 검색(<http://likms.assembly.go.kr/record>)

회의록 시스템을 통해 2분기, 3분기에 해당되는 회의록 수는 178건(중복 제외)으로 검색되어졌다. 회의록 자체의 내용이 방대하고 정확한 발언 발췌를 위해 키워드 검색을 통해 하되 해당 발언의 문맥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발언의 맥락과 핵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집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Key Word〉

장애, 편의, 정신, 약자, 특수, 저상(버스), 특수,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돌봄

발언 수집기준은 ‘한 회의에서, 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한 의원이, 장애인 정책 관련 중심으로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발언한 내용’ 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모니터단에게 해당의 내용들을 ‘선교육 - 단원별 발췌 테스트 - 담당자 검증 - 실무 진행’의 절차로 진행하였다.

1. 2분기, 3분기 모니터링 일반 현황

1-1. 의원 발언 및 회의록 현황

22년 2,3분기에 해당하는 국정감사의 의원 발언 현황 결과를 보면, 장애인정책 관련 발언을 한 의원 수는 총 21명이며, 발언 수는 총 35건으로 발언의원 1인당 평균 1.66건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현황 결과를 보면, 모니터링 대상 회의록은 178개로 이 중 발언 발생 회의록은 15개(약 8.4%)로 회의록 당 약 2.33개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결과를 같은 기간 작년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류	의원 발언 현황			회의 현황			
	정책 발언 수	발언 의원 수	발언의원 1인당 평균 발언 수	모니터링 대상 회의록 수	발언발생 회의록 수	발언발생 빈도	발생 회의록당 발언 수
2분기	8	5	1.60	52	6	11.5%	1.33
3분기	27	18	1.50	126	7	5.5%	3.85
종합	35	21(중복)	1.66	178	15	8.4%	2.33

〈참고〉 21년 2분기, 3분기 일반 현황 결과

분류	의원 발언 현황			회의 현황			
	정책 발언 수	발언 의원 수	발언의원 1인당 평균 발언 수	모니터링 대상 회의록 수	발언발생 회의록 수	발언발생 빈도	발생 회의록당 발언 수
2분기	45	25	1.80	229	22	9.6%	2.09
3분기	39	22	1.77	104	16	15.3%	2.43

1-2. 분야별 발언 수

기본적으로 센터에서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2011년부터 장애인정책 발언을 분야 10개(대분류), 분류 53개(중분류), 주제(소분류)로 나누어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의정모니터링 사업 역시 이러한 분류표를 통해 정책 발언을 수집하였다. 다만 발언 검토에 있어 회의록 자료가 방대하여 주요발언 위주로 검토하며, 발언 중 중복되는 성격의 발언들은 되도록 배제하였다. 분야 별 장애인 정책의 현안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 발언을 제시하였다.

분기	분야별 발언 수										
	복지 일반	보건 의료	고용	교육	문화 체육	접근/이동권	정보 접근권	권익 옹호	여성	자립 생활	계
2분기	6	-	-	-	-	1	1	-	-	-	8
3분기	23	-	-	1	-	1	1	1	-	-	27
합계	29	-	-	1	-	2	2	1	-	-	35

1-3. 분류별 발언 현황

1-3-1. 복지일반

복지 일반	분류	복지 정책	복지 일반 예산	복지 서비스/시설	복지 관련 법/제도	계
	2분기	2	3	-	1	6
	3분기	1	-	1	21	23

<복지일반 주요 발언>

복지일반	2분기	3분기
복지정책	장애인 정책 이행 정도 지적	탈시설 시범사업 질의
복지일반 예산	코로나 장애인 확진자 격리를 위한 예산 확보, 장애인 거주시설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급 예산 요구, 장애인후보자 선거 경비의 명확한 분류	-
복지관련 법/제도	장애인 확진자 관리체계	탈시설 정책 질의 및 탈시설법 찬반 의견, 장애인활동지원법 수정 요구, 장애인 확진자 관리체계 요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조정, 장애인 보도 기준 질의, 발달장애인 지원법 수정 요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 ‘복지정책’ 분류를 살펴보면, 2분기에서는 전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이행 정도에 대해 미흡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발언이 있었고, 3분기에서는 향후 진행 예정 중인 탈시설 시범사업에 대한 질의 발언이 있었다.

● 이종성 위원 (중략) 27개 공약 이행 결과를 좀 보면 한두 개 말고는 대부분 공약들이 시범사업 단계나 아니면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중요 사례만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 등급제 폐지한다 그래서 도입을 했는데 이 종합조사에서 약 3000명 장애인이 오히려 서비스가 감소했고 787명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어요. 중증장애인 또 독거장애인의 많은 수가 대부분이 지금 탈락한 대상입니다.

(중략)

● 이종성 위원 3.4%입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지금 2020년도 보면 국가·지자체 3%, 민간 기업 2.9%, 개선이 안 되고 있지요. 국가·지자체들이 부담한 고용부담금이 558억 원, 공공기관이 334억 원 이렇게 국민의 혈세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때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부 맞습니까? 장애인 고용률이 34.9%로 문재인 정부 이전보다 더 낮아졌어요. 그다음에 장애인 건강권 보장, 주치의 사업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공급자인 의료진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략)

돌봄 공백 해소하려는 노력은 없이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활동서비스 사업, 장애인 사업 예산 150억 원 삭감해서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이용했고, 2021년도에도 280억 원 삭감해서 코로나 예산으로 이용했습니다. (중략)

● 국무총리 김부겸 위원님, 제가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들이 나중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 2월 8일, 제393회, 제2차 예결위, 이종성 의원 발언 중

- ‘복지일반 예산’ 분류를 살펴보면, 코로나 장애인확진자 대응 예산 확보, 장애인 거주시설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급 요구, 장애인후보자 선거 경비의 명확한 분류를 요하는 발언이 있었다.

● 최혜영 위원 (중략) 장애인 확진자 대응 예산이 없어서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중략) 장관님, 그런데 현재 국립재활원에서 운영 중인 이 51개의 장애인 전담 감염병 병상은 코로나19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병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독립된 격리병동이 아니라 일반병동으로 사용하고 있던 병실 일부에 이동형 음압기를 설치하여 만든 병실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감염병 전담 병상을 만약에 확대를 하려면 일반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을 전원조치 해야 하고요. 그리고 확진자가 전담 병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감염병 우려가 있습니다. (중략)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장애인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음압병상까지 갖춘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이동형 음압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중략)

장애인 거주시설을 비롯해서 직업재활시설 또는 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복지시설의 선제검사를 통해서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특히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또 확산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증증화나 이런 것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혜영 위원 예산 확보에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 2022년 2월 7일, 제393회, 상임위원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 발언 중

‘복지관련 법/제도’는 복지일반 분야 중 가장 많은 22건을 차지하였다. 발언들을 살펴보면 탈시설 정책의 발언이 11건 있었고, 장애인활동지원법 관련 5건, 장애인 확진자 관리체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 보도 기준,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발언들이 각각 있었다.

〈탈시설 정책 진행 관련 1.〉

◎ 김성주 위원 그럼 제가 복지부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로부터, 현재 있는 장애인생활시설로부터 나와서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것이 가정이든 다른 형태의 지원 주택이든.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복지부가 그런 방향을 발표하고 로드맵까지도 제시했지요?

◎ 보건복지부장장애인정책국장 염민섭 예, 그렇습니다.

◎ 김성주 위원 그런데 그게 왜 빨리……(중략) 그런데 그게 왜 빨리 지원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겁니까? 정부의 예산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현재의 장애인시설 운영 측의 반대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장애인 부모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지요?

◎ 보건복지부장장애인정책국장 염민섭 스웨덴이나 외국 사례를 보면 대부분 시설을 이렇게 해서 탈시설을 추진하는 데 30년, 40년이 걸렸습니다. 저희도 지금 한 20년 정도 잡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에 거주하실 때보다 밖에 나왔을 때 삶의 질이 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와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설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2022년 4월 7일, 제393회, 상임위원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 발언 중

〈탈시설 정책 진행 관련 2.〉

◎ 서영석 위원 복지부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내에 선행돼야 될 과제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또 탈시설 이후에 장애인들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방안들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고 있는 것이 불안감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갈등 요소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정부가 그동안 이 문제를 시설한테 다 맡기고 탈시설에 대한 아무런 대책들을 마련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신이 가중된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재정과 예산을, 투자를 통해서 그런 불신들을 해소시켜 나가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탈시설 이후에 대한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김현아 진술인이 느끼는 것처럼 그런 불안감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없을 때 우리 아이를 누가 봐 주지?’ 이런 불안감에 싸여 있으면 결국은 저항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시켜 줘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의 의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장장애인정책국장 염민섭 앞으로 3년 동안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일단 시설에 계신 분들이 나와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들, 즉 소득이라든가 직업 또 주간활동,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보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3년 동안. 그 작업을 하는 데 우리 부모님들이라든가 관련 단체 의견들 또 그리고 당사자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2022년 4월 7일, 제393회, 상임위원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발언 中

1-3-2. 접근/이동권

접근/ 이동권	분류	이동권관련 예산	이동권관련 법/제도	계
	2분기	1	-	2
	3분기	-	1	2

〈고용 주요 발언 비교〉

문화체육	2분기	3분기
이동권 관련 예산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앱 마련	-
이동권 관련 법/제도	-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이동권 관련 예산’ 분류를 살펴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앱을 국가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발언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 된 발언이 각각 있었다.

◎ 이종성 위원 (중략)

전국 실태조사하고 스마트앱 개발하고는 연관성이 거의 없어요.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해 봐서 알기 때문에, 이 실태조사 대상 건축물하고 스마트앱하고는 연관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것 가지고 이 사업하고 결부를 시켜서 2023년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수용 곤란하다 이것은 너무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 이 사업 자체는 이번 추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장애인들에게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자체들이 막 독자적으로 자기네들 관광지 어플 같은 것을 다 개발하고 있어요. 이것 나중에 통합도 안 되고 그중에 99%는 다 버려지는 거예요. 쓰레기예다가 지금 지자체들이 예산 다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몇 억씩, 10~20억씩 막 투입해 가면서 자체적으로 어플 개발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술적으로 통합도 안 되는 것들은 다 버려지는 거거든요.

그런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심을 갖고 기술표준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리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해 왔거든요. 그 부분은 정부가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세요.

◎ 보건복지부장관인정책국장 염민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앱을 빨리 개발해서 활용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시급히 개발해야 되고요.

다만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저희가 한 18만 5000개에 대해서 2018년도에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일단 활용하고 법상 5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이 실태조사를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실태조사한 것을 업그레이드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2022년 4월 7일, 제393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이종성 의원 발언 중

1-3-3. 정보접근권

정보 접근권	분류	정보컨텐츠	계
	2분기	1	2
	3분기	1	2

〈보건의료 주요 발언 비교〉

보건의료	2분기	3분기
정보컨텐츠	선거후보자 토론 시 발화자별 수어통역사를 배치 요구	화폐의 접근권 보장

- ‘정보컨텐츠’ 분류를 살펴보면 분기 별 각 1건, 총 2건의 발언이 있었다. 2분기에는 대선후보 토론에 후보별로 통역사를 배치해야한다는 발언과 시간장애인을 위한 화폐의 접근권 보장관련 발언이 있었다.

◎ 장혜영 위원 (중략) 지금 한국 사회에 시각장애인들이 현금 있잖아요. 물론 현금을 쓰는 빈도가 많이 낮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현금을 1만 원짜리랑 5000원짜리랑

1000원짜리를 구별한다고 생각하세요?

◎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창용 지금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난번 국감인가요, 그때도 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혜영 위원 (중략)국감에서 다른 나라들의 국책은행들이, 한국은행과 같은 기관들이 어떻게 이런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장애인들의 금융이나 화폐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드렸더니 그 의견을 잘 받아 주셔서, 내일이 장애인의 날이기 때문에 한은에서 그 날짜에 맞춰서 한국은행권 액면 식별 도우미 앱을 출시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중략)총재로 취임하시게 된다면 이런 접근성 문제랑 관련해서 한국은행에 별도의 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할 좀 하시고 주기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점검하고 좀 개선해 나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창용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제가 생각해도 의미 있는 앱이 지금 출시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제안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고.

- 2022년 4월 19일, 제39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 발언 中

2.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 선정

2-1. 우수의원 선정 배경

모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조차도 장애인 인권과 복지 등의 정책과제는 종종 외면 받아왔다. 장애인을 대표하는 소수 비례대표의원들만 외롭게 분투하고 있으며, 몇몇 관련 상임위에서 단편적으로 다루어질 뿐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의 국회 모니터활동도 인식과 관심의 부족, 전문성 결여로 인해 장애인 정책에 관해서는 실효성 있는 감시와 평가,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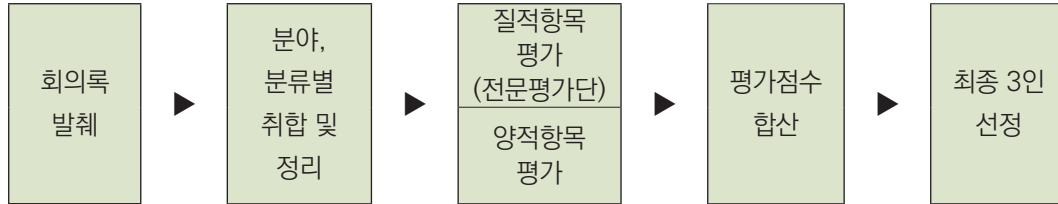
장애인 정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포괄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동시에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장기적 비전을 기초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지속적으로 국회의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을 감시,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의 수립과 정책의 공공성을 높이고, 장애인 정책의 발전과 인권 신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2005년도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단은 국회의 본회의를 포함한 위원회 활동 전반을 모니터하여, 장애인 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을 선정하였다. 모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하여,

장애인 정책의 발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한 우수의원을 선정함으로써 그 활동을 격려하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자성과 분발을 촉구하고자 한다.

〈장애인정책 의정모니터 백서 中,(2005)〉

2-2. 우수의원 선정 과정



국회의정 모니터링을 위한 ‘국회의정 모니터단원’(장애인 당사자 2명 포함)을 총 4명으로 구성하였다. 이전 분기에 구성된 단원들에게 발언 발췌 방법, 회의록 사전 발췌 테스트를 포함하는 실 교육을 약 2주간 진행한 바 있다. 단원에 의한 발언 발췌 결과를 담당자가 분야, 분류별 취합 정리하였고, 해당 자료를 자문위원(국회의정 평가단)의 평가를 거친 다음, 평가 결과의 합산을 통해 상위 3인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하였다.

2-3. 평가항목

발언에 따른 점수를 계량화하기 위해 평가 항목은 크게 질적 항목과 양적 항목으로 나눈다. 질적 항목은 구체성, 전문성, 달성가능성, 적정성으로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양적 항목은 의원들의 발언 수이다. 각 항목별 배점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양적 항목의 경우, 1개의 발언 수가 전체의 81%(전체 의원 21명 중 17명)를 차지하였다. 이에 발언 수의 빈도를 기준으로 3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구간별 점수를 부여하였다.

〈2분기, 3분기 국회의정활동 모니터링사업 발언점수 평가 항목〉

구분	내용	배 점	비 고
질적 항목	구체성	0~3점	해당사항 없음 0 내용별 발언에 대한 질적수준에 따라 1~3점 부여
	전문성		
	달성 가능성		
	적정성		
양적 항목	발언 수	1건 1점 2건 3점 3건 이상 5점	발언 수의 빈도를 기준으로 3구간으로 구분 후 1~5점 차등 부여

2-4. 결과분석

2-4-1. 일반적 현황

앞서 밝혔듯이 2, 3분기의 의원 발언 현황 결과를 보면, 장애인정책 관련 발언을 한 의원은 총 21명이며, 발언 수는 총 35건으로 발언의원 1인당 평균 1.66건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현황 결과를 보면, 모니터링 대상 회의록은 178개로 이 중 발언 발생 회의록은 15개(8.4%)로 회의록당 약 2.33개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발언의 분야를 살펴보면, 전체 10개 분야 중 5개의 분야에서 발언이 나왔으며, 그 중 복지일반 분야에 대한 발언이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접근/이동권 및 정보접근권 각각 2건, 교육 및 권익옹호 분야에서 각각 1건이 있었다.

분기 분기	의원 발언 현황			회의 현황			
	정책 발언 수	발언 의원 수	발언의원 1인당 평균 발언 수	모니터링대상 회의록 수	발언발생 회의록 수	발언 발생빈도	발생 회의록당 발언 수
종합	35	21	1.66	178	15	8.4%	2.33

분기 분기	분야 발언 수										
	복지 일반	보건 의료	고용	교육	문화 체육	접근 /이동권	정보 접근권	권익 옹호	여성	자립 생활	계
종합	29	-	-	1	-	2	2	1	-	-	35

2-4-2. 질적 항목 평가 결과

35건의 평가 대상 발언에 대한 질적 항목 평가를 위해 자문위원의 항목별 평가를 실시하였다. '국회의정활동 모니터링사업 발언점수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각 발언에 따라 항목별 평가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점수를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산출된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질적 항목 평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발언 당 질적 항목 평가 점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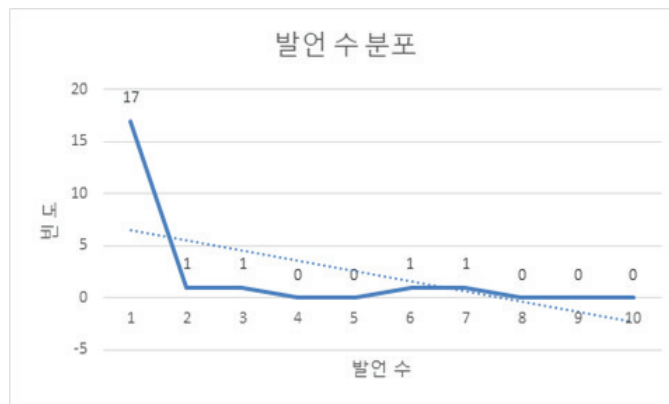
(단위 : 명, 점)

구분	빈도수 (발언 의원)	최소값	최대값	평균(표준편차)
질적 항목 점수	21	5.3	11.0	8.2(1.58)

2-4-3. 양적 항목 평가 결과

양적 항목 평가는 기존의 질적 항목 평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질적 항목 평가는 발언에 따른 평가점수에 대한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발언 수의 양적측면은 고려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1건이 발언을 한 의원의 평균점수와 10건의 발언을 한 의원의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이 두 의원의 발언 정도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선정 배경에서도 밝힌 정책 참여도와 적극성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적 항목에 의한 평가 결과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적 항목 평가 점수를 고려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하였다. 여기에서의 양적 항목은 정책 참여도 및 적극성을 보여주는 항목으로써 '발언 수'를 활용하였다.



구분	최대값	최소값	중앙값	평균(표준편차)
양적 항목	7	1	1	1.90(1.95)

〈의원 발언 수 분포〉

양적 항목인 발언 수의 빈도를 보면, 한 의원이 최소 1건부터 최대 7건의 발언을 하였다. 위의 발언 수 분포를 살펴보면 1건의 발언을 한의원 17명이며, 2건 1명, 3건 1명, 6건 1명, 7건 1명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건의 발언을 한 의원이 전체 81%를 차지하고

있어 2건 이상의 발언들과 편차가 큼에 따라 평균값(1.9)을 기준으로 최대값, 최소값을 고려하여 3구간을 나누어 가산점을 부여하였다. 발언 수의 빈도를 3구간으로 구분한 결과, 1구간은 1건, 2구간은 2건, 3구간은 3건 이상으로 나누었다. 이에 차등적으로 1건은 가점 1점, 2건은 가점 3점, 3건 이상은 가점 5점을 부여하였다.

〈발언 수에 따른 가점 표〉

발언 수(건)	발언 의원 빈도 수	퍼센트(%)	가점
1	17	81	1
2	1	4.8	3
3	1	4.8	3
6	1	4.8	5
7	1	4.8	5

2-5. 최종 결과

앞선 평가에 따라 질적 항목 평가 점수와 발언빈도에 따른 가산점을 최종적으로 합산한 결과 최종 3인을 선정하면 아래와 같다.

순위	발의자	발언 수	평균점수 (질적 항목)	발언빈도에 따른 가점	총점
1	최혜영	7	9.0	5	14.0
2	이종성	6	8.9	5	13.9
3	이은주	2	10.3	3	13.3

민선 7기 지방정부 장애인 예산분석

- 광역단체 장애인예산 비율 평균 3.4%에 그쳐
- 서울특별시 장애인 1인당 예산 강남구 1위, 영등포구 꼴찌

고영란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2022년 7월 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민선 8기’가 출범하였다. 6.1 지방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17개 광역단체장과 226개 기초단체장은 변화와 혁신, 소통을 통해 세계 경제 위기 격랑 속에 지방시대의 기틀을 새롭게 다지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글로벌 복합위기까지 겹쳐 현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고 지자체 재정 자립도 또한 2018년 53.4%에서 2021년 48.7%로 떨어지고 있다. 민선 8기 지자체장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된 만큼 지방자치를 주민자치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안정을 도모하는 민생정치가 실현된다면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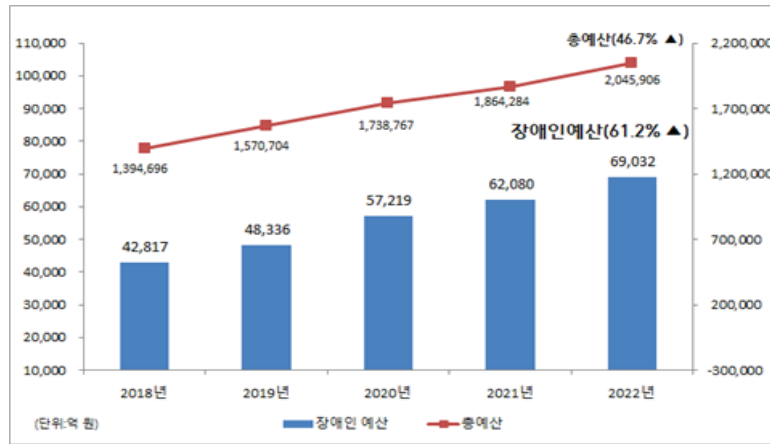
2022년 지방정부 예산은 민선 7기가 마지막으로 관여한 예산이다. 지방정부의 과제는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하고,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일이다. 특히, 민선 7기 5년간 장애인정책과 관련된 장애인예산의 변화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일은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장애인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다만 현재 본 센터에서 분석된 2022년 지방정부의 장애인예산은 17개 광역단체 본청과 서울특별시 25개 구이다. 이를 기준으로 민선 7기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지방정부 장애인예산을 양적 수치 중심으로 분석해보려 한다.

1. 17개 광역단체 장애인예산 분석

1. (2018년~2022년) 광역단체 장애인 총예산 추이

〈그림-1〉은 민선 7기 5년간(2018년~2022년) 광역단체 총예산대비 장애인 총예산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22년 광역단체 총예산은 2,045,906억 원이다. 2018년 1,394,696억 원에서 2022년까지 651,210억 원 증액되었다. 5년간 광역단체 총예산은 46.7%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2022년 광역단체 장애인 총예산은 69,032억 원이다. 2018년 42,817억 원에서 2022년까지 26,215억 원 증액되었다. 민선 7기 동안 장애인예산은 61.2% 증가하였다.

〈그림-1〉 (2018년~2022년) 광역단체 장애인 총예산 추이



2. 광역단체별 장애인 총예산 및 비율

아래 <표-1>에서 17개 광역단체별 장애인예산과 총예산대비 장애인예산의 비율을 볼 수 있다. 2022년 장애인예산 총액이 가장 많은 광역단체는 서울특별시로 1,430,816,742천 원이다. 다음으로 경기도가 1,119,997,23천 원의 장애인예산을 편성했다. 뒤를 이어 부산광역시(535,726,229천 원), 대구광역시(417,617,363천 원), 경상남도(408,005,507천 원) 순이다. 17개 광역단체 중 등록장애인 인구수가 많은 상위 3곳이다. 반면 장애인예산을 가장 적게 편성한 광역단체는 세종특별자치시로 55,345,40천 원이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95,800,959천 원)와 울산광역시(166,203,442천 원), 강원도(194,622,280천 원) 순으로 나타난다. 등록장애인 인구수가 가장 적은 3곳의 광역단체이다. 장애인 총예산이 등록장애인 인구수와 비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2년 광역단체 중 장애인 총예산이 4천억 원 이상인 광역단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5곳이다. 광역단체 평균 장애인 총예산(406,069,817천 원) 이하 광역단체는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를 포함해 12곳이나 된다. 그중 장애인예산이 2천억에도 미치지 못하는 광역단체는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강원도 4곳이다.

민선 7기 5년간 장애인예산 증감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로 5년간 27,908,105천 원 증액되어 101.7%의 증감률을 보였다. 다음은 경기도로 544,077,598천 원 증액되어 94.5%이다. 등록장애인 인구수 최하위 세종과 최상위 경기가 장애인예산 증감률을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다. 뒤를 이어 경남(86.9%), 광주(73.6%), 전북(73.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제주 특별자치시는 5년간 57,657,340천 원 감액되어 -37.6% 증감률을 보였다.

〈표-1〉 (2018년~2022년) 17개 광역단체별 장애인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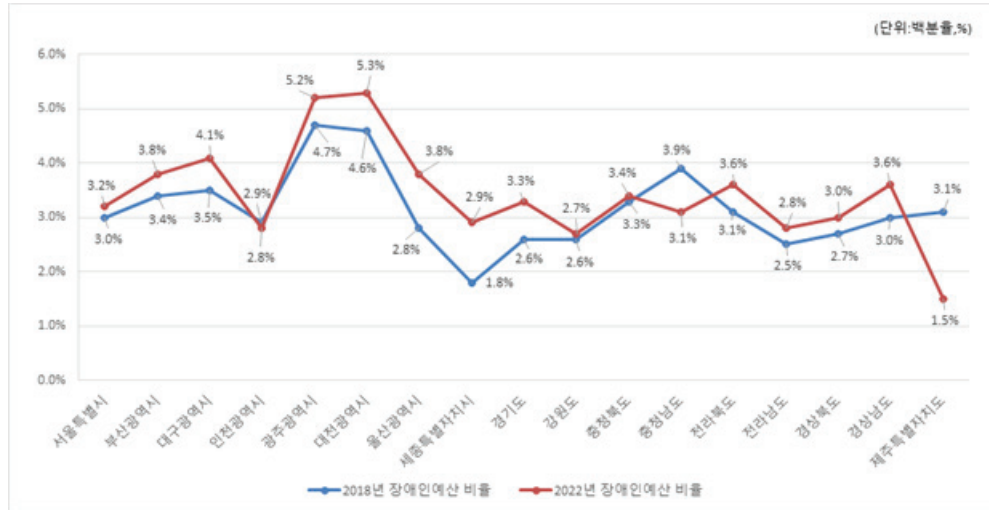
(단위 : 천원, %)

지사체	2018년		2020년		2022년		5년간 장애인예산	
	장애인예산	비율	장애인예산	비율	장애인예산	비율	증감액	증감률
서울	950,762,257	3.0%	1,246,727,668	3.0%	1,430,816,742	3.2%	480,054,485	50.5%
부산	342,334,510	3.4%	461,343,241	3.3%	535,726,229	3.8%	193,391,719	56.5%
대구	272,730,008	3.5%	335,673,174	3.4%	417,617,363	4.1%	144,887,355	53.1%
인천	216,520,484	2.9%	309,819,821	3.1%	369,603,639	2.8%	153,083,155	70.7%
광주	210,003,209	4.7%	279,959,119	4.9%	364,512,670	5.2%	154,509,461	73.6%
대전	199,362,492	4.6%	262,234,009	3.6%	334,876,425	5.3%	135,513,933	68.0%
울산	96,502,580	2.8%	126,022,308	4.9%	166,203,442	3.8%	69,700,862	72.2%
세종	27,437,297	1.8%	39,774,368	3.7%	55,345,402	2.9%	27,908,105	101.7%
경기	575,919,635	2.6%	891,689,111	3.2%	1,119,997,233	3.3%	544,077,598	94.5%
강원	120,877,390	2.6%	173,451,746	2.5%	194,622,280	2.7%	73,744,890	61.0%
충북	138,145,685	3.3%	175,941,416	3.3%	211,684,106	3.4%	73,538,421	53.2%
충남	205,569,481	3.9%	239,374,307	2.8%	275,232,600	3.1%	69,663,119	33.9%
전북	175,431,663	3.1%	239,462,784	2.9%	304,069,286	3.6%	128,637,623	73.3%
전남	167,725,242	2.5%	240,616,940	3.5%	279,521,800	2.8%	111,796,558	66.7%
경북	210,595,897	2.7%	299,745,261	1.3%	339,551,208	3.0%	128,955,311	61.2%
경남	218,301,405	3.0%	326,380,799	3.4%	408,005,507	3.6%	189,704,102	86.9%
제주	153,458,298	3.1%	73,653,242	3.5%	95,800,958	1.5%	-57,657,340	-37.6%
합계/평균	4,281,677,533	3.1%	5,721,869,314	3.3%	6,903,186,890	3.4%	2,679,166,697	61.2%

광역단체 장애인예산 비율 평균 3.4%에 그쳐

2022년 총예산대비 장애인예산의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단체는 대전광역시로 5.3%이다. 2018년 4.6%에서 5년간 0.7% 증가한 것이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로 장애인예산 비율이 2018년 4.7%에서 0.5% 증가한 5.2%이다. 17개 광역단체 중 대전, 광주 2곳이 장애인예산 비율 5%대이다. 뒤를 이어 대구광역시가 4.1%,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각각 3.8%이며, 전라북도과 경상남도 장애인예산 비율은 각각 3.6%이다. 반면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낮은 장애인예산 비율은 제주특별자치도로 1.5%에 그치고 있다. 2018년 3.1%에서 1.6% 감소하였다. 그 뒤를 이어 강원도가 2.7%, 인천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각각 2.8%의 장애인예산 비율을 나타냈다. 2022년 광역단체 17곳의 평균 장애인예산 비율은 3.4%로 아직 5%대에도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평균 장애인예산 비율 3.4%에도 못 미치는 광역단체는 제주(1.5%), 강원(2.7%), 인천(2.8%), 전남(2.8%), 세종(2.9%) 포함 총 9곳이다.

〈그림-2〉 (2018년~2022년) 광역단체별 장애인예산 비율 추이



3. 광역단체 장애인 1인당 예산

장애인 1인당 예산은 장애인예산 총액을 등록장애인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 즉, 그 지역의 평균적인 장애인복지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 아래 〈표-2〉에서 2018년과 2022년 광역단체별 장애인예산, 장애인 인구수 그에 따른 장애인 1인당 예산을 파악할 수 있다. 2022년 17개 광역단체 장애인 1인당 평균 예산은 2.885천 원이다. 민선 7기 초 2018년 1,952천 원에서 47.8% 상승한 것이다.

〈표-2〉 광역단체 장애인 1인당 예산 현황

(단위: 천원,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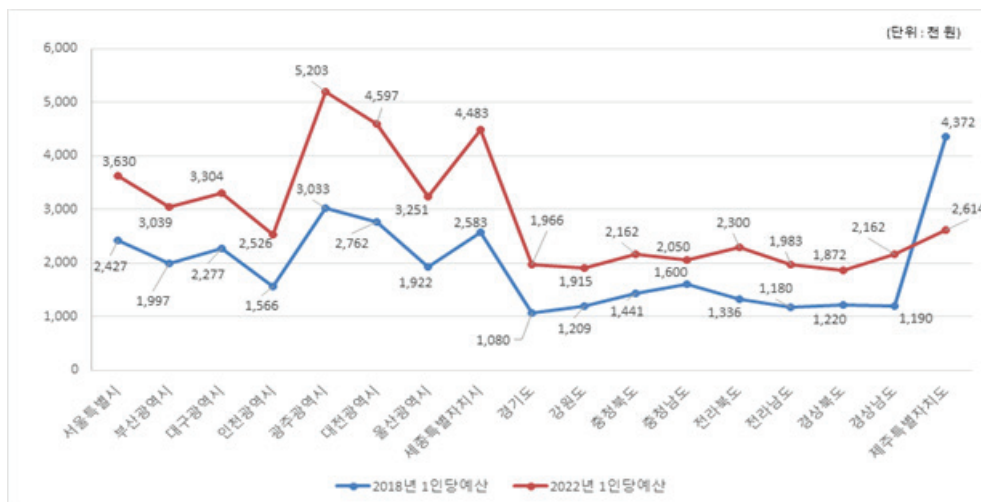
지자체	2018년 장애인예산			2022년 장애인예산			1인당 예산 증감률
	장애인 총예산	장애인 인구수*	장애인 1인당 예산	장애인 총예산	장애인 인구수*	장애인 1인당 예산	
서울특별시	950,762,257	391,753	2,427	1,430,816,742	394,190	3,630	49.6%
부산광역시	342,334,510	171,384	1,997	535,726,229	176,293	3,039	52.2%
대구광역시	272,730,008	119,766	2,277	417,617,363	126,398	3,304	45.1%
인천광역시	216,520,484	138,304	1,566	369,603,639	146,321	2,526	61.3%
광주광역시	210,003,209	69,233	3,033	364,512,670	70,061	5,203	71.5%
대전광역시	199,362,492	72,180	2,762	334,876,425	72,853	4,597	66.4%
울산광역시	96,502,580	50,205	1,922	166,203,442	51,122	3,251	69.1%
세종특별자치시	27,437,297	10,623	2,583	55,345,402	12,346	4,483	73.6%
경기도	575,919,635	533,259	1,080	1,119,997,233	569,726	1,966	82.0%
강원도	120,877,390	99,959	1,209	194,622,280	101,615	1,915	58.4%
충청북도	138,145,685	95,844	1,441	211,684,106	97,932	2,162	50.0%

충청남도	205,569,481	128,503	1,600	275,232,600	134,250	2,050	28.2%
전라북도	175,431,663	131,303	1,336	304,069,286	132,207	2,300	72.1%
전라남도	167,725,242	142,174	1,180	279,521,800	140,942	1,983	68.1%
경상북도	210,595,897	172,533	1,220	339,551,208	181,366	1,872	53.4%
경상남도	218,301,405	183,510	1,190	408,005,507	188,749	2,162	81.7%
제주특별자치도	153,458,298	35,104	4,372	95,800,958	36,655	2,614	-40.2%
합계/평균	4,281,677,533	2,545,637	1,952	406,069,817	2,633,026	2,885	47.8%

광역단체별 장애인 1인당 예산 최대 2.8배 차이 보여

2022년 광역단체 평균 장애인 1인당 예산은 2,885천 원이다. 광역단체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1인당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광주광역시로 5,203천 원이다. 17개 광역단체 중 장애인 1인당 예산이 유일하게 500만 원을 넘었고, 장애인예산 비율도 17개 광역단체 중 두 번째로 높았다. 다음은 장애인예산 비율이 가장 높았던 대전광역시로 4,597천 원이다. 뒤를 이은 세종특별자치시(4,483천 원)는 대전과 함께 장애인 1인당 예산이 400만 원대다. 반면 장애인 1인당 예산이 가장 낮은 경상북도는 1,872천 원이다. 다음은 강원도(1,915천 원), 경기도(1,966천 원), 전라남도(1,983천 원)로, 경상북도 포함 4곳은 장애인 1인당 예산이 200만 원에도 못 미치고 있다. 등록장애인 인구수로는 경상북도(188,749명)가 광주광역시(70,061명)의 2.7배나 많지만, 광주광역시의 장애인은 1인당 연간 5,203천 원의 혜택을 받고, 경상북도 장애인은 1,872천 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장애인에게 경상북도의 장애인보다 연간 1인당 2.7배 더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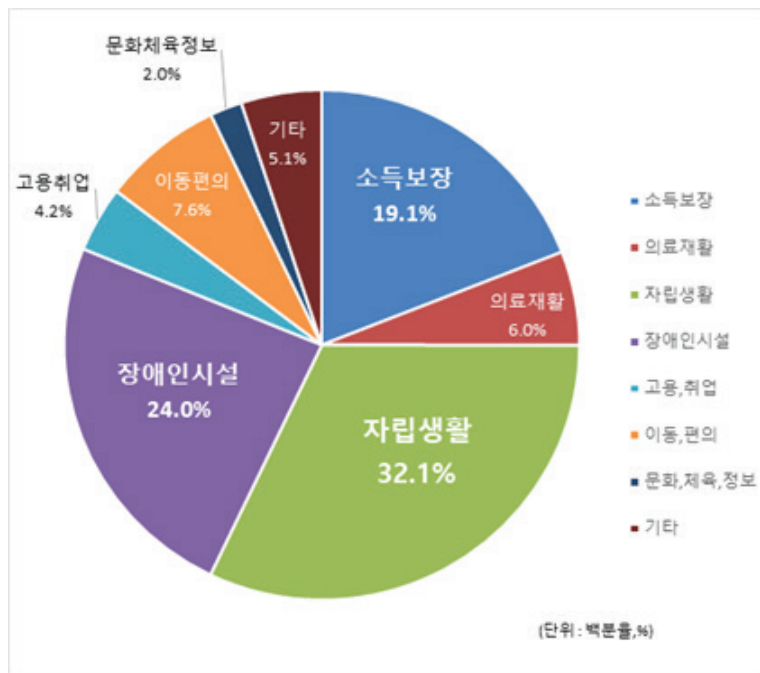
〈그림-3〉 (2018년~2022년) 광역단체별 장애인 1인당 예산 추이



4. 2022년 광역단체 장애인예산 성격 분류

〈그림-4〉에서 장애인예산 사업명을 기준으로 소득보장, 의료재활, 자립 생활, 장애인시설, 고용·취업, 이동·편의, 문화·체육·정보, 기타 8가지로 분류하여 2022년 광역단체 장애인예산의 질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8개 성격 분류 중 자립 생활 분야가 31.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시설(24.0%), 소득보장(19.1%)이 뒤를 이었다. 자립 생활, 장애인시설, 소득보장 세 분야가 광역단체 장애인 총예산의 75.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문화·체육·정보 분야는 2.0%로 8개 분야 중 가장 적은 비중을 보였다. 다음으로 고용·취업(4.2%), 기타(4.3%), 의료재활(6.1%), 이동·편의(7.6%) 순이다.

〈그림-4〉 2022년 광역단체 장애인예산 성격 분류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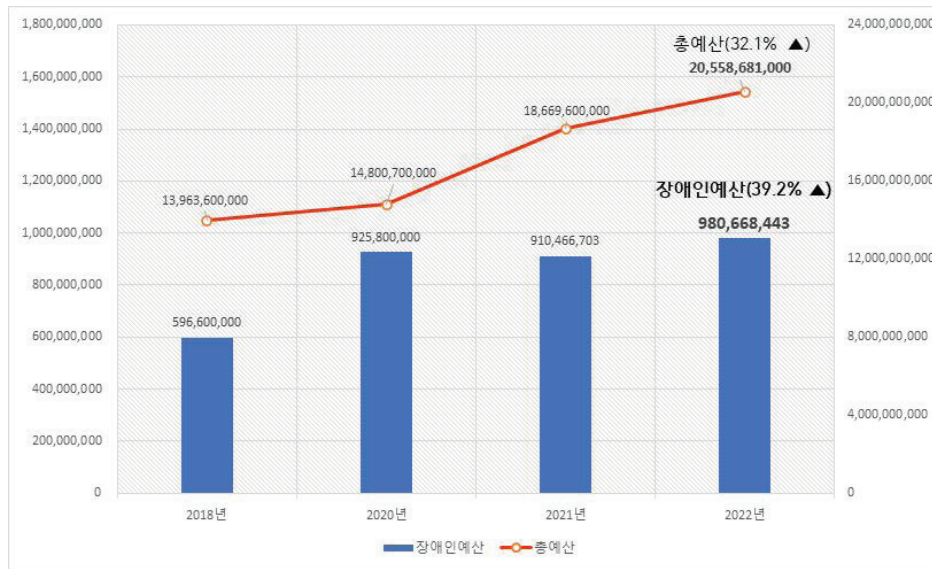
II. 서울특별시 25개 구 장애인예산 분석

1. 서울특별시 장애인예산 현황

〈그림-1〉에서 민선 7기 5년(2018년~2022년)간 서울특별시 25개 구의 총예산과 장애인예산 추이를 볼 수 있다. 2022년 서울특별시 25개 구 총예산은 20,558,681,000천 원이다. 2018년

13,963,600,000천 원에서 민선 7기 5년간 32.1% 증가하였다. 2022년 서울특별시 25개 구 장애인예산은 980,668,443천 원이다. 2018년 596,600,000천 원에서 39.2% 증액되었다. 서울특별시 총예산대비 장애인예산은 7.1% 더 증가하였다.

〈그림-5〉 (2018년~2022년) 서울특별시 25개 구 장애인예산 추이



2. 서울특별시 25개 구별 장애인예산 및 비율

〈표-3〉은 2022년 서울특별시 25개 구별 장애인예산 총액과 비율, 5년간 증감률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예산이 가장 많은 구는 강서구(83,353,153천 원)와 노원구(82,138,386천 원)이다. 강남구(62,828,119천 원)와 강동구(60,955,979천 원), 은평구(52,492,866천 원)가 다음 순이다. 강서구와 노원구는 2021년도 장애인예산 총액 순위에서도 1위, 2위를 차지했다. 민선 7기 5년간 꾸준히 장애인예산에서 상위권을 유지해온 구이다. 반면 장애인예산 총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중구(14,336,540천 원)와 용산구(15,622,438천 원)이다. 중구와 용산구는 2018년 서울특별시 25개 구 장애인예산에서 하위인 구였다. 뒤를 이어 종로구(16,829,449천 원), 금천구(25,2019,475천 원), 동대문구(10,921,597천 원) 순이다. 서울특별시 25개 구 중 중구, 용산을 포함한 15개 구가 장애인예산 평균 39,226,738천 원에도 못 미친다.

서울특별시 25개 구 장애인예산 총액은 민선 7기 5년간 39.2% 증가하였다. 구별로 증감률을 살펴보면, 양천구가 53.1% 가장 큰 폭의 증감률이다. 다음으로 은평구와 강동구가 각각 49.0% 증가하였다. 성북구(46.8%), 구로구(45.4%)가 뒤를 이었다. 반면 강북구는 -2.8%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특별시 25개 구 중에 유일하게 5년간 장애인예산이 감소한 구이다. 다음으로 종로구(21.5%)와 강남구(5.2%)는 장애인예산이 소폭 증가했다. 서울특별시 25개 구의 장애인예산 증감률 39.2%에도 못 미치는 구는 강북구(-2.8%), 종로구(21.5%), 강남구(25.7%), 중구(32.7%), 마포구(33.6%), 중랑구(36.6%), 관악구(36.7%), 동대문구(37.3%), 노원구(38.4%), 성동구(38.5%)로 10개 구다.

〈표-3〉 서울특별시 25개 구 장애인예산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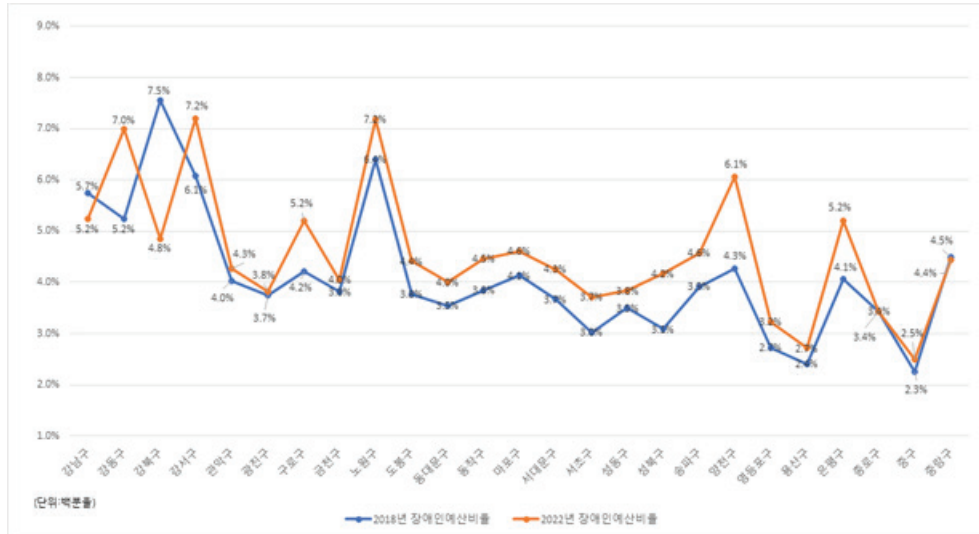
(단위:천원,백분율)

지자체명 지자체명	2018년 장애인예산총액		2022년 장애인예산총액		5년간 증감현황	
	(총예산대비 비율)		(총예산대비 비율)		증감액	증감률
강남구청	46,663,429	5.7%	62,828,119	5.2%	16,164,690	25.7%
강동구청	31,094,330	5.2%	60,955,979	7.0%	29,861,649	49.0%
강북구청	41,226,381	7.5%	40,100,568	4.8%	- 1,125,813	-2.8%
강서구청	46,440,578	6.1%	83,353,153	7.2%	36,912,575	44.3%
관악구청	24,414,110	4.0%	38,590,120	4.3%	14,176,010	36.7%
광진구청	16,615,692	3.7%	27,992,102	3.8%	11,376,410	40.6%
구로구청	23,790,895	4.2%	43,577,369	5.2%	19,786,474	45.4%
금천구청	15,172,245	3.8%	25,201,475	4.0%	10,029,230	39.8%
노원구청	50,637,018	6.4%	82,138,386	7.2%	31,501,368	38.4%
도봉구청	18,944,698	3.8%	32,600,807	4.4%	13,656,109	41.9%
동대문구청	18,376,901	3.5%	29,298,498	4.0%	10,921,597	37.3%
동작구청	19,447,962	3.8%	32,954,595	4.5%	13,506,633	41.0%
마포구청	23,378,612	4.1%	35,226,040	4.6%	11,847,428	33.6%
서대문구청	17,488,076	3.7%	29,374,873	4.3%	11,886,797	40.5%
서초구청	17,230,531	3.0%	29,484,257	3.7%	12,253,726	41.6%
성동구청	15,559,888	3.5%	25,283,681	3.8%	9,723,793	38.5%
성북구청	19,574,466	3.1%	36,782,177	4.2%	17,207,711	46.8%
송파구청	27,759,549	3.9%	48,591,359	4.6%	20,831,810	42.9%
양천구청	24,222,181	4.3%	51,655,664	6.1%	27,433,483	53.1%
영등포구청	14,239,162	2.7%	25,290,325	3.2%	11,051,163	43.7%
용산구청	9,291,486	2.4%	15,611,438	2.7%	6,319,952	40.5%
은평구청	26,776,058	4.1%	52,492,866	5.2%	25,716,808	49.0%
종로구청	13,205,065	3.4%	16,829,449	3.4%	3,624,384	21.5%
중구청	9,641,937	2.3%	14,336,540	2.5%	4,694,603	32.7%
중랑구청	25,437,945	4.5%	40,118,603	4.4%	14,680,658	36.6%
합계	596,629,195	4.3%	980,668,443	4.9%	384,039,248	39.2%

장애인예산 비율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자치단체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볼 수 있다. 〈그림-6〉에서 2022년 서울특별시 구별 장애인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구는 강서구와 노원구로 각 7.2%이다. 강동구(7.0%), 양천구(6.1%), 강남구(5.2%), 구로구(5.2%), 은평구(5.2%)가 뒤를 이었다. 강서구와 노원구의 장애인예산 비율은 2018년에도 6.1%와 6.4%를 나타내며

강북구 7.5%에 이어 2, 3위였다. 강서구와 노원구는 장애인예산과 장애인예산비율에서도 25개 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중구의 장애인예산 비율은 2018년 2.3%에 이어 2022년에도 2.5%로 25개 구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다. 다음으로 용산구(2.7%), 영등포구(3.2%), 종로구(3.4%), 서초구(3.7%) 순이다.

〈그림-6〉 (2018년~2022년) 서울특별시 25개 구별 장애인예산 비율



자치단체별 장애인예산 비율 높은 편차 보여

서울특별시 2022년 장애인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강서구(7.2%), 노원구(7.2%)와 가장 낮은 중구(2.5%)는 약 2.9배의 차이가 난다. 강서구(28,727명)와 노원구(27,312명)는 장애인 인구수가 서울특별시 25개 구 중 가장 많다. 강서구와 노원구는 많은 장애인예산을 통해 장애인정책과 함께 장애인 관련 인프라 구축에 지속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중구는 2018년 장애인예산 비율 2.3%에서 5년간 단지 0.2% 만이 상승 하였다. 여전히 가장 낮은 장애인예산 비율을 보인다. 서울특별시 25개 구 중 등록된 장애인 인구수도 가장 적은 중구(5,700명)는 상대적으로 장애인정책과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장애인 1인당 예산

〈표-4〉에서 서울특별시 25개 구별 장애인복지 수준을 볼 수 있는 장애인 1인당 예산현황을 볼 수 있다. 2022년 서울특별시 장애인 1인당 예산 평균금액은 2.463천 원이다. 2018년 평균

1,527천 원에서 61.3% 증가했다. 장애인 1인당 예산이 가장 많은 구는 강남구로 4,133천 원이다. 서울시 25개 구 중 유일하게 장애인 1인당 예산이 400만 원을 넘었다. 다음은 강동구(3,330천 원), 노원구(3,007천 원)로 2곳이 300만 원대다. 뒤를 이어 양천구(2,942천 원), 강서구(2,902천 원), 종로구(2,798천 원), 서초구(2,797천 원), 마포구(2,720천 원) 순으로 서울특별시 장애인 1인당 예산 평균 2,463천 원보다 많은 8개 구이다. 반면 장애인 1인당 예산이 가장 낮은 구는 2021년에 이어 영등포구로 1,739천 원이다. 다음은 동대문구(1,866천 원), 관악구(1,904천 원), 용산구(1,961천 원), 중랑구(1,967천 원) 순으로 장애인 1인당 예산이 20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 17개 구가 장애인 1인당 예산 평균 2,463천 원에도 못 미친다.

〈표-4〉 서울특별시 25개 구별 장애인 1인당 예산 현황

(단위:천원, 백분율)

지자체	2018년			2022년			장애인 1인당 예산 증감률
	장애인예산	장애인 인구수*	장애인 1인당 예산	장애인예산	장애인 인구수*	장애인 1인당 예산	
강남구청	46,663,429	15,617	2,988	62,828,119	15,200	4,133	38.3%
강동구청	31,094,330	17,413	1,786	60,955,979	18,307	3,330	86.4%
강북구청	41,226,381	17,377	2,372	40,100,568	17,441	2,299	-3.1%
강서구청	46,440,578	28,717	1,617	83,353,153	28,727	2,902	79.4%
관악구청	24,414,110	20,103	1,214	38,590,120	20,265	1,904	56.9%
광진구청	16,615,692	12,514	1,328	27,992,102	12,353	2,266	70.6%
구로구청	23,790,895	17,289	1,376	43,577,369	18,280	2,384	73.2%
금천구청	15,172,245	11,059	1,372	25,201,475	11,390	2,213	61.3%
노원구청	50,637,018	27,436	1,846	82,138,386	27,312	3,007	62.9%
도봉구청	18,944,698	15,196	1,247	32,600,807	15,436	2,112	69.4%
동대문구청	18,376,901	15,893	1,156	29,298,498	15,701	1,866	61.4%
동작구청	19,447,962	14,590	1,333	32,954,595	14,607	2,256	69.2%
마포구청	23,378,612	13,250	1,764	35,226,040	12,951	2,720	54.2%
서대문구청	17,488,076	12,644	1,383	29,374,873	12,551	2,340	69.2%
서초구청	17,230,531	10,774	1,599	29,484,257	10,542	2,797	74.9%
성동구청	15,559,888	11,770	1,322	25,283,681	11,412	2,216	67.6%
성북구청	19,574,466	17,529	1,117	36,782,177	17,490	2,103	88.3%
송파구청	27,759,549	19,790	1,403	48,591,359	20,286	2,395	70.7%
양천구청	24,222,181	17,232	1,406	51,655,664	17,558	2,942	109.2%
영등포구청	14,239,162	14,351	992	25,290,325	14,539	1,739	75.4%
용산구청	9,291,486	8,116	1,145	15,611,438	7,960	1,961	71.3%
은평구청	26,776,058	21,301	1,257	52,492,866	21,773	2,411	91.8%
종로구청	13,205,065	6,064	2,178	16,829,449	6,015	2,798	28.5%
중구청	9,641,937	5,694	1,693	14,336,540	5,700	2,515	48.6%
중랑구청	25,437,945	20,034	1,270	40,118,603	20,394	1,967	54.9%
합계/평균	596,629,195	391,753	1,527	980,668,443	394,190	2,463	61.3%

* 국가통계도표(2021.12.기준)

장애인 1인당 예산 강남구 1위, 영등포구 꼴찌

2022년 서울특별시 25개 구 중 장애인 1인당 예산 최고액 vs 최저액 구를 비교하면 <표-5>와 같다. 2022년 강남구는 총예산 1,200,115,000천 원, 장애인예산 62,828,119천 원으로 장애인예산 비율은 5.2%이다. 강남구의 등록장애인에게는 1인당 연간 4,133천 원이 쓰이고 있다. 25개 구 중에 장애인 1인당 예산 최고금액이다. 반면 2022년 영등포구는 장애인예산이 25,290,325천 원으로 총예산대비 장애인예산 비율은 3.2%이다. 영등포구의 등록장애인에게는 1인당 연간 1,739천 원이 쓰이는 것으로 25개 구 중에 장애인 1인당 예산 최저금액이다. 강남구(15,200명)와 영등포구(14,539명)의 등록장애인 인구수는 비슷하지만, 장애인 1인당 쓰이는 예산은 2.4배 차이를 보인다.

<표-5> 2022년 장애인 1인당 예산 영등포구 vs 강남구 비교

(단위:천원,명)

자치단체명	예산총액 (A)	장애인예산 (B)	장애인예산 비율(B/A)	장애인 인구수 (C)	장애인 1인당 예산(B/C)
영등포구	784,852,000	25,290,325	3.2%	14,539	1,739
강남구	1,200,115,000	62,828,119	5.2%	15,200	4,133

<표-6>에서 강남구와 영등포구의 장애 관련 주요사업 예산을 살펴보았다. 장애인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예산은 강남구 27,961,617천 원, 영등포구 14,795,969천 원이다. 장애인연금은 강남구 9,466,804천 원, 영등포구 4,826,214천 원이 책정되어 있다. 두 가지 주요사업 모두 2배 정도 차이를 보인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 사업에 강남구는 14,181,262천 원, 영등포구는 808,546천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장애아 통합보육 관련 예산은 강남구 1,991,912천 원, 영등포구 302,592천 원으로 6배 정도 차이로 강남구가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는 강남구가 1,657,700천 원과 영등포구 1,992,002천 원으로 영등포구가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표-6> 2022년 사업별 장애인예산 비교 (강남구 vs 영등포구)

(단위:천원)

강남구		영등포구	
1.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	27,961,617	1.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14,795,969
2. 장애인복지관 운영 (무료 식당 운영 포함)	14,181,262	2. 장애인연금급여 지급	4,826,214
3.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9,466,804	3. 장애인 일자리 지원	1,992,002
4.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1,991,912	4.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	808,546
5. 장애인 일자리 사업	1,657,700	5.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374,512
6.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센터 운영	1,426,362	6.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302,5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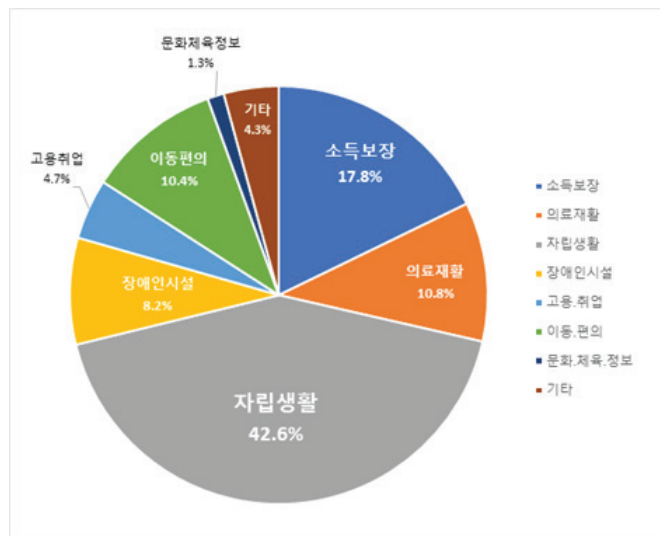
7.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899,883	7.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센터 운영	186,660
8.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안전점검 및 기능보강	861,982	8.	중증장애인 명절 위문	175,800
9.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수리비 지원	470,700	9.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149,000
10.	중증장애인 스마트 홈 지원 및 스마트정류장	388,680	10.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117,555

강남구의 ‘중증장애인 스마트 홈 지원 및 스마트정류장’(388,680천 원) 사업 예산이 주목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불편 없는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과 기존 노후화된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정류장에 ‘버스 정보 단말기(BIT)’를 설치하는 것이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주거공간 변화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지자체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4. 2022년 서울특별시 장애인예산 성격 분류

서울특별시의 장애인예산을 사업명을 기준으로 소득보장, 의료재활, 자립 생활, 장애인시설, 고용·취업, 이동·편의, 문화·체육·정보, 기타 8가지로 분류하여 질적 분석을 하였다. <그림-7>에서 2022년 서울특별시 장애인예산의 성격 분류 분포를 볼 수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자립생활로 42.6%이다. 선택적 복지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직접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직접급여인 소득보장이 17.8%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의료재활 분야 10.8%, 이동편의 분야 10.4%, 장애인시설 분야 8.2% 순이다. 반면, 가장 적은 비중으로 문화·체육·정보 분야로 1.3%이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 전반 분야에서 제약을 받아 위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기타 분야 4.3%, 고용 취업 분야 4.7%로 적은 비중을 보인다.

<그림-7> 서울특별시 장애인예산 성격 분류 분포도



■ 분석 결과

이것으로 민선 7기 5년간(2018년~2022년) 17개 광역본청과 서울특별시 25개 구의 장애인 정책을, 총예산, 장애인예산, 장애인 인구수 등 데이터를 통해 개괄적 현황을 살펴보았다. 2022년 광역단체 장애인예산은 2,045,906억 원이다. 민선 7기 5년간 광역단체 장애인예산은 평균 61.2% 증가하였다. 총예산이 46.7% 증가한 것에 비하면 장애인예산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장애인예산의 비율이 3.4%인 것은 아쉬운 점이다. 2018년 장애인예산비율 3.1%에서 0.3% 소폭 상승에 그쳤다. 2022년 서울특별시 25개 구 장애인예산은 69,032억 원이다. 민선 7기 동안 39.2% 증가하였다. 총예산은 20,558,681,000천 원으로 32.1% 증가하였다. 2022년 서울특별시 장애인예산 비율은 평균 4.9%이다. 광역단체와 서울특별시 모두 총예산에서 장애인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에도 못 미친다.

2022년 17개 광역단체 평균 장애인 1인당 예산은 2,885천 원이다. 광주광역시가 5,203천 원으로 가장 많은 광역단체다. 경상북도는 1,872천 원으로 가장 낮은 장애인 1인당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광주와 경북은 2.7배의 장애인 1인당 예산 차이를 보인다. 서울특별시 25개 구 평균 장애인 1인당 예산은 2,463천 원이다. 강남구가 4,133천 원으로 최고액이고, 2021년에 이어 영등포구가 1,739천 원으로 최저액이다. 강남구와 영등포구의 장애인 1인당 예산은 2.4배의 차이가 난다. 지방정부의 장애인예산 편중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2018년 3월 『제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를 발표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통합사회를 실현하여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뜻을 담았다. 민선 7기 임기가 끝난 지금 장애인의 삶은 얼마나 변화되었을까? 장애인예산이 5년간 61.2%(광역단체), 39.2%(서울특별시) 증액되었으나, 20년간 이동권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예산은 양적으로 5년간 꾸준히 증액됐으나, 아직 OECD 평균의 1/2 수준 정도이다. 장애인예산의 OECD 평균까지 도달이 시급하다. 또한, 등록장애인 인구수와 장애인 정책 인프라에 따라 지역별 장애인예산은 차이가 난다는 걸 고려하더라도 현재 보이는 광역단체 및 서울특별시 지역 간 장애인예산, 비율, 장애인 1인당 예산의 편차는 매우 심각하다.

2022년은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하였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이하 종합계획』 수립도 추진하고 있다. 실무추진단은 장애인단체 및 현장 전문가, 연구자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및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복지·교육·문화·경제 등 사회 각 영역을 망라하는 추진과제를 발굴, 검토 후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고 한다. 민선 8기 지자체장들도 앞다투어 장애인과 함께 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종합계획을 통한 장애인 정책 실천과 민선 8기의 지방정부 장애인예산을 통해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차별 없는 사회 실현 ▲장애인 삶의 질 향상 ▲권익 증진을 꼭 이루어주길 바란다.

2022년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분석

-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비율 1.07%에 그쳐
- 5년간 장애인예산 92.9% 증가
- 복지지출 OECD 38개국 중 하위권에 머물러

고영란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장애인예산은 장애인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장애인이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본적인 CRPD 제 20조 「개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니, 교육에서의 기회가 박탈되고, 또한 고용 시장에서의 기회 불평등이 생기면서 장애인 계층의 빈곤을 가중하고 있다.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UN 총회에서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후, CRPD) 이 채택되었다. 국제인권협약 중 여덟 번째이다. 2009년 우리나라에 비준되며 국내법의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50개 조항 중 일명 한국조항은 제 6조 여성장애인, 제 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제 20조 개인의 이동권이다. 국내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 3월 6일 제정되어 2007년 4월 10일 공포되었다. CRPD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5년 흐른 지금 우리 사회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받고 있을까?

지난 2021년 12월 3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5년 차 마지막 중앙정부 예산이 확정 의결되었다. 정부안 대비 3.3조 원 증액된 607조 6,000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 558조 원보다 49.7조 원(8.2%) 증액되었다. 중앙정부 본예산이 600조 원을 넘은 것은 2022년이 처음이다.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 했다.

600조 원이 넘는 2022년 예산 속에 장애인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문재인 정부 5년간(2018년~2022년) 중앙정부 장애인예산 추이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중앙정부 부처별 예산을 대상으로 장애인예산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1. 중앙정부 장애인예산

2022년 중앙정부 예산 총지출은 607조 7000억 원이다. 센터가 모니터링을 통해 발췌한 2022년 장애인예산 규모는 6조 4900억 원이다. 2021년 장애인예산 6조 4,600억 원보다 339억 원, 즉 0.5% 증가한 것이다. 올해 국가재정 총지출의 1.07% 비율에 불과하다. 장애인 예산비율이 1%대를 넘은 것은 불과 1년 전인 2021년도 1.16%부터이다. 중앙정부 총지출은 5년간 41.7% 증액되었다. 장애인예산은 5년간 92.9%의 상승률을 보인다. 국가통계포털에 의한 2021년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인구수는 264만 명이다. 장애인 인구수 대비 장애인 1인당 예산은 2018년 1,321천 원에서 2022년 85.7% 상승한 2,453천 원이다.

(2018년~2022년) 중앙정부 장애인예산 규모와 비율

(단위 :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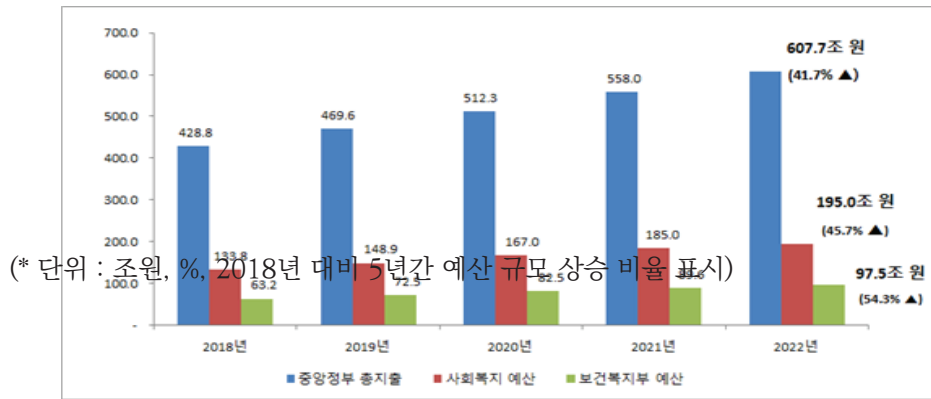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률 (전년 대비)
중앙정부 예산 규모	총지출	428.8	469.6	512.3	558.0	607.7	△ 8.9% (△ 49.7조 원)
	사회복지 예산	133.8	148.9	167.0	185.0	195.0	△ 5.4% (△ 10조 원)
	보건복지부 예산	63.2	72.5	82.5	89.6	97.5	△ 8.8% (△ 7.9조 원)
장애인예산 규모		3.36	4.27	5.07	6.46	6.49	△ 0.5% (△ 0.03조 원)
장애인 예산비율	총지출 대비	0.78%	0.91%	0.99%	1.16%	1.07%	△ 0.29%
	사회복지 예산 대비	2.51%	2.87%	3.04%	3.49%	3.33%	△ 0.82%
	보건복지부 예산 대비	5.33%	5.89%	6.15%	7.21%	6.66%	△ 1.33%

(*출처 : 열린 재정/재정정보시스템/정책모니터링센터 장애인 예산발췌)

문재인 정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중앙정부 예산 규모는 꾸준히 증가했다. 중앙정부 총지출은 2018년 428.8조 원에서 2022년 607.7조 원으로 5년간 41.7% 증액됐다. 사회복지 예산은 2018년 133.8조 원에서 5년간 61.2조 증액되어 195조 원이다. 45.7%의 증가율을 보인다. 대부분의 장애인예산이 책정되는 보건복지부 예산은 2018년 63.2조 원에서 34.3조 원 증액된 97.5조 원으로 5년간 54.3%가 증액되었다. 그리고 장애인예산은 2018년 3조 3600억 원에서 2022년 6조 4600억 원으로 3조 1000억 원이 증액되어, 5년간 92.9%가 증가하였다. 2배 가까운 증가율을 보인다. 하지만

국회 예산서 분석보고서 중 OECD 국가별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비교에 따르면, OECD 38개국 회원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평균 20.0%이다. 그에 반해 한국의 비율은 12.2%이다. OECD 38개국 중 35위(2019년 기준)로 하위권이다. 공공사회복지지출과 장애인예산의 국가별 기준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런데도 한국의 사회복지 예산이 최소한 OECD 국가 사회복지지출 비율 상위권은 아니더라도 평균까지는 올려야 하는 게 중앙정부의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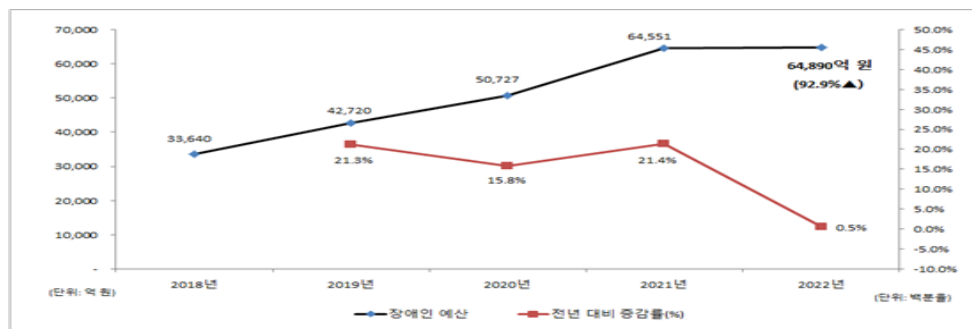
(2018년~2022년) 중앙정부 예산 규모



2. 장애인 예산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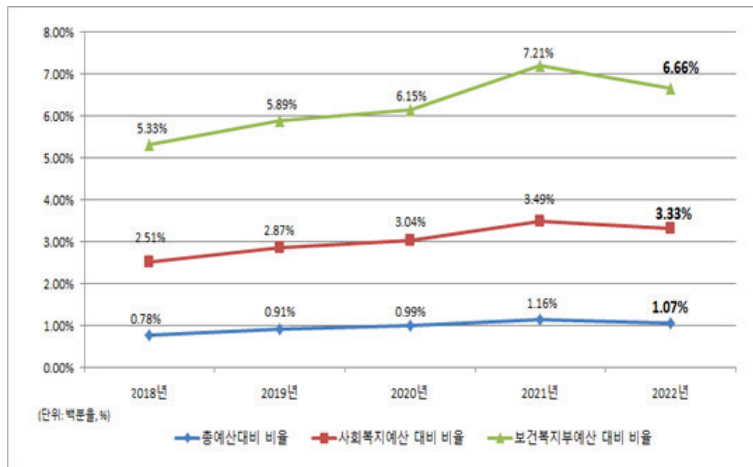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장애인 예산비율은 2018년 0.78%에서 5년간 0.28% 상승하여 2022년은 1.07%의 비율을 보인다. 사회복지예산 대비 장애인 예산비율은 2018년 2.51%에서 5년간 0.81% 증액되어 2022년 3.33%이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예산 대비 장애인 예산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 5.33%에서 5년간 1.33% 상승하여, 2022년도에 6.66%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8~2022년) 중앙정부 장애인예산 추이



위의 설명과 같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예산은 5년간 꾸준히 양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장애인예산 총액은 5년간 92.9%로, 2배 가까이 증액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장애인 예산비율은 1.07%로, 장애인 분야의 재정투입은 답보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국가의 예산은 공공분야의 국가적 정책 우선순위를 가장 실질적으로 드러내는 구체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1월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역 장애인용 리프트의 쇠줄이 끊어져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상을 입은 추락 사고를 계기로 장애인이동권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신)를 중심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되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2018년 정권이 교체되고 문재인 정부가 구성되어 5년이 지나 새 정부가 들어서는 2022년 시점의 장애인 정책예산 성적표치고는 장애인 당사자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양적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장애인예산이 장애인들의 기본권과 이동권을 지키기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대한 투자로 충분한지 중앙정부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2018~2022년)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비율 추이



3. 자원별 장애인예산

장애인예산을 자원별로 나눠보면 약 79.9%인 5조 1,823억 원은 일반회계 예산이다. 특별회계 예산은 2,887억 원으로 4.5%를 차지하고 있다. 15.7%인 1조 178억 원은 기금으로 구성되어있다. 그중 국토교통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에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에 1억 8,900만 원,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사업」에 5억 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985.6억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93.6억 원을 편성하였다.

2022년 중앙정부 자원별 장애인예산

(단위 : 백만 원, %)

구분	금액	비율
일반회계	5,182,355	79.9%
특별회계	288,765	4.5%
기금	1,017,897	15.7%
총계	6,489,017	100.0%

기금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기금이 약 7,662억 원으로 가장 많다. 주로 장애인 고용 지원사업과 장애인 취업 지원 및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에 사용된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 약 12억 원이 장애인예산으로 편성되어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으로 편성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 통신 발전기금은 방송 접근성 보장,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수어방송 제작지원 등에 사용된다.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정신건강 증진이나 재활병원 지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장애인 생활 안정지원으로 저소득장애인 자립자금 용자가 7억 원 편성되었다.

4. 부처별 장애인예산

2022년 장애인예산의 부처별 편성 비율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예산은 4조 6654억 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 중 71.9%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비율은 지난해의 73%에 비해 1.1%가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중앙정부 장애인예산은 점차 보건복지부로 편중되고 있다. 중앙정부 장애인예산의 0.1%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처는 보건복지부 외 10개 부처이다.

예산액이 큰 비중 순으로 5개 부처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문화체육관광부이다. 고용노동부가 7662억 원으로 11.8%이다. 뒤를 이어 국토교통부는 5071억 원으로 7.8%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국가보훈처로 2991억 원을 편성하여 4.6% 비율이며,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1471억 원으로 2.3% 비율을 보인다..

이 중 보건복지부(▽ 1.1%), 국가보훈처(▽ 0.4%), 교육부(▽ 0.4%)가 전년 대비 장애인예산이 줄어들었다. 반면 고용노동부(▲ 1.3%), 국토교통부(▲ 0.7%), 문화체육관광부(▲ 0.4%) 외 5개 부처 장애인예산이 증가했다. 가장 비율이 높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3개 부처가 전체 중앙정부 장애인예산의 91.5%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부서별 편중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장애인예산은 작년 대비 871억 원, 12.8% 증액되어 7663억 원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근로자 안정적 고용유지, 중증장애인 중심 맞춤형 취업 지원, 직업능력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5071억 원의 장애인예산을 편성하여 작년보다 449억 원, 9.7% 증액되었다. 철도운영 PSO 보상,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관련 예산이 주요 항목이다. 특히 최근 쟁점이 되는 이동권 관련 예산은,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관련 예산을 전년 48억 원보다 45억 원, 95% 증액한 93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 예산의 경우 2022년도 985억 원으로 2021년보다 50% 증가했다.

(2021년, 2022년) 중앙정부 부처별 장애인예산 현황

(단위:천원, %)

부처	2021년 예산	비율	2022년 예산	비율
보건복지부	4,709,262,736	73.0%	4,665,413,104	71.9%
고용노동부	679,109,904	10.5%	766,299,164	11.8%
국토교통부	462,205,000	7.2%	507,163,000	7.8%
국가보훈처	324,942,318	5.0%	299,107,279	4.6%
문화체육관광부	117,434,915	1.8%	147,106,866	2.3%
교육부	69,972,829	1.1%	46,015,070	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143,000	0.2%	16,445,960	0.3%
중소벤처기업부	13,359,124	0.2%	12,875,000	0.2%
질병관리청	13,424,967	0.2%	11,854,485	0.2%
산림청	400,000	0.0%	5,457,500	0.1%
경찰청	-	0.0%	5,205,000	0.1%
기획재정부	2,658,000	0.0%	1,949,000	0.0%
문화재청	1,491,000	0.0%	1,495,000	0.0%
방송통신위원회	246,340	0.0%	948,300	0.0%
해양수산부	1,043,800	0.0%	587,800	0.0%
통일부	372,040	0.0%	380,500	0.0%
여성가족부	10,343,000	0.2%	340,000	0.0%
식품의약품안전처	8,000	0.0%	248,000	0.0%
인사혁신처	1,292,094	0.0%	83,030	0.0%
병무청	41,738	0.0%	17,289	0.0%
농촌진흥청	-	0.0%	5,419	0.0%
환경부	114,075	0.0%	5,000	0.0%
농림축산식품부	-	0.0%	4,800	0.0%
기상청	9,829	0.0%	3,000	0.0%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4,500	0.0%	2,400	0.0%
조달청	67,539	0.0%	2,000	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0.0%	1,452	0.0%
원자력안전위원회	1,000	0.0%	1,000	0.0%
국민권익위원회	28,000	0.0%	-	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3200000	0.5%	-	0.0%
외교부	871920	0.0%	-	0.0%
통계청	11548	0.0%	-	0.0%
국세청	31122	0.0%	-	0.0%
합계	6,455,090,338	100.0%	6,489,016,418	100.0%
*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방부, 법무부, 법제처,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특허청, 행정안전부			장애인예산 없음	
* 관세청, 금융위원회, 해양경찰청, 국세청			예산서 제공 받지 못함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예산은 2022년 1471억 원이다. 2021년보다 296억 원, 25.3% 증액되었다. 장애인 전문체육 및 국제체육 지원 349억 원을 비롯한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에 275억 원을 책정했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감염병에 더욱 취약한 장애인의 생활 체육활동이 감소함에 따라 2년 연속 비슷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장애인예산을 164억 원을 책정했다. 2021년 131억 원에서 33억 원 25.1% 증액한 금액이다. 청각장애인용 자막 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소외계층방송접근권 보장, 수어방송 제작 지원과 수어 통역사 재교육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교육부의 장애인예산은 2021년 700억 원에서 239억 원 34.2% 감액된 460억 원을 편성하였다. 방과 후 교육 지원, 돌봄교실 운영, 자유학기제 및 교수학습 프로그램 운영, 장애 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등 예산이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되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동, 교육, 노동, 주거,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부처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부처에서의 장애인예산이 배제되곤 한다. 장애인을 동정과 복지 시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려는 시각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과 인권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장애인 정책에서도 곳곳에서 이런 현상을 찾을 수 있다. 특히 국가권익위원회에 장애인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유감이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방부, 법무부, 법제처,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특허청, 행정안전부 12개 부처의 예산서에서도 장애인예산이 탈취되지 않았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인권과 안전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금융위원회, 해양경찰청, 국세청 4곳 부처는 예산서도 받지 못했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예산 주요사업

2022년 장애인예산의 71.9%를 차지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예산 중 예산액 순으로 주요사업을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아동 가족 지원, 장애 수당 8가지 사업이다. 이 사업 예산은 총 4조 601억 원으로 보건복지부 총예산의 87%에 해당한다.

2021년, 2022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예산 주요사업

(단위 : 억 원, 백분율 %)

세부 사업명	2018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장애인활동지원	6,906	17,405	10,499	152.0%
장애인연금	6,009	8,326	2,317	38.6%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4,709	6,224	1,515	32.2%
발달장애인 지원	85	2,083	1,998	2350.6%
장애인 일자리 지원	957	1,853	896	93.6%
장애아동 가족 지원	1,912	1,491	- 421	-22.0%
장애 수당	1,298	1,424	126	9.7%

현금 급여로는 장애인연금 8326억 원, 장애인 수당 1424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1조 7405억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6224억 원,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에 1491억 원이다. 이 밖에 정신건강 증진시설 운영지원에 1794억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1853억 원이 책정되었다. 특히,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2015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문재인 정부 5년간 85억 원에서 1998억 원이 증액되어 2083억 원이 편성되었다. 2350.6%의 상승률을 보인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전년(30만 원)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약 27만 6,000명의 중증장애인이 부가급여(월 최대 8만 원)를 포함하여 월 최대 38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중앙정부는 장애인연금 예산으로 8326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2018년 예산보다 2317억 원, 즉 38.6%가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장애인연금 예산의 확대는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안전장치가 되어 줄 것이다.

장애인 자립 생활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인 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1조 7405억 원으로 편성했다. 2018년 6906억 원에서 1조 499억 원이 증액되어 152% 상승했다. 결국, 장애인연금을 제치고 장애인 복지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의 사업이 되었다. 이용 대상자를 9만 9천 명에서 10만 7천 명으로 확대하고, 최종중증장애인 돌봄을 위해 가산급여 대상도 3천 명에서 4천 명으로 확대했다. 단가는 14,020원에서 14,800원으로 증액됐으며, 활동 지원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도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여 처우를 개선하였다.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은 622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2018년 4709억 원 예산 대비 1515억 원 즉, 32.2% 증액되었다. 많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거주하며 지역사회와의 단절

문제가 생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8월 2일 장애인의 주거 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지원하기 위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의 발표하였다. 그러나 20년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고 2022년~2024년 3년을 시범사업으로 탈시설/자립 지원 여건을 조성하고, 201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많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5. 장애인예산 성격별 분류

다음으로 장애인예산의 질적 분석을 위해 예산의 사업명을 기준으로 성격별 분류를 하였다. 본 센터에서는 장애인예산을 정책의 성격 분야에 따라 소득보장, 의료재활, 자립 생활, 장애인시설, 고용 취업, 이동 편의, 문화체육정보, 기타 8가지로 나누었다.

1) 장애인예산 성격별 분류

2022년 중앙정부 장애인예산을 8가지 성격을 기준으로 성격별 분류를 진행했다. 8개 분야 중 소득보장 -6.5%, 기타 -5.4%, 의료재활 -1.3%, 고용취업 -0.4%, 4개 분야에서 전년 대비 장애인예산이 감소하였다. 반면 자립생활, 장애인시설, 이동편의, 문화체육정보 4개 분야에서 각 5.9%, 1.4%, 6.2%, 0.4%씩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0.5% 증가하였다.

2021년, 2022년 중앙정부 장애인예산 성격별 분류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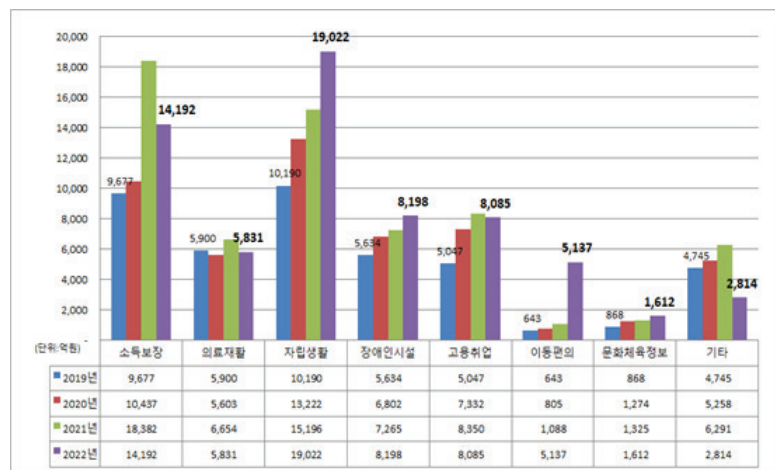
구분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장애인예산	비율	장애인예산	비율	증감액	증감비율
소득보장	18,382	28.5%	14,192	21.9%	- 4,190	▽6.5%
의료재활	6,654	10.3%	5,831	9.0%	- 823	▽1.3%
자립생활	15,196	23.5%	19,022	29.3%	3,826	▲5.9%
장애인시설	7,265	11.3%	8,198	12.6%	933	▲1.4%
고용취업	8,350	12.9%	8,085	12.5%	- 265	▽0.4%
이동편의	1,088	1.7%	5,137	7.9%	4,049	▲6.2%
문화체육정보	1,325	2.1%	1,612	2.5%	287	▲0.4%
기타	6,291	9.7%	2,814	4.3%	- 3,477	▽5.4%
합계	64,551	100.0%	64,891	100.0%	340	▲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가장 먼저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48.9%), 의료보장(27.9%), 주거 보장(7.4%), 고용보장(3.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22년 장애인예산 성격별 분류에서 보면, 자립생활(29.3%)이 가장 높고, 소득보장(21.9%)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장애인시설(12.6%)과 고용취업(12.5%) 순이다.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분야는 문화체육정보로 2.5%를 차지했다.

2) 장애인예산 성격별 추이

(2019년~2022년) 중앙정부 장애인예산 성격별 추이



장애인예산을 성격별 분류한 2019~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이 증액된 분야는 이동편의다. 2019년 643억 원에서 5137억 원(▲699%)으로 대폭 상승했다. 다음으로 자립생활(▲87%)과 문화체육정보(▲86%)가 뒤를 이었다. 자립생활 분야는 1조 190억 원에서 1조 9022억 원으로, 문화체육정보 분야는 868억 원에서 1612억 원으로 증액됐다. 4년간 예산이 감소한 분야는 의료재활과 기타 분야이다. 의료재활은 5900억 원에서 5831억 원으로 1% 감소세를 보였으며, 기타 분야는 4745억 원에서 2814억 원으로 41% 줄어들었다.

■ 분석 결과

2022년 중앙정부 장애인예산은 6조 4900억 원이다. 중앙정부 예산 규모 대비 1.07%의 비율이다. 2021년보다 339조 원, 0.5% 증가하였다. 중앙정부 총지출은 607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9% 늘어난 규모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장애인예산 추이를 보면,

2018년 3조 3600억 원에서 3조 1300억 원 증액(92.9%)되어 6조 4900억 원이 책정되었다. 중앙정부 총지출이 5년간 41.7% 증액된 것에 비하면 장애인예산은 2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장애인 예산비율이 1.07%인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나라는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의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됐다. 하지만 복지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4%로서 OECD 선진국 평균(21.6%)의 절반에도 못 미쳐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장애인예산의 편중 현상이 여전히 심각하다. 2022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예산은 4조 6654억 원으로 중앙정부 장애인예산 6조 4890억 원 대비 71.9%를 차지한다. 장애인예산 순위대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3개 부처가 전체 장애인예산의 91.5%이다. 5년간 보건복지부 예산 비중을 보면, 2018년 74.6%, 2019년 76.1%, 2020년 73.0%, 2021년 73.0%로 평균 74.3%이다. 이는 이동, 교육, 노동, 문화, 행정, 안전 등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가 필요한 예산은 배제하고 장애인을 복지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들이 정부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장애인 문제를 복지의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장애 포괄적 관점을 적용해 장애 주류화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2022년 이동편의 분야 예산은 5년간 699% 대폭 증액됐다.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가 주를 이룬다. 서울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94% 설치됐고, 전국에 저상버스가 27.8% 도입되었는데 2001년 이후 20년간 장애인단체는 이동권 보장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자유로운 이동이 곧 교육, 노동권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비장애인이 기본권과 인권을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장애인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이동권 주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문 대통령은 퇴임 전 장애인의날을 맞아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더 배려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무관심을 자책해야 한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5년간 이동편의 관련 예산이 700% 가까이 증액되었지만, 장애인들의 기본적 이동권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2022년 3월 9일, 48.56%의 국민 지지로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윤석열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47에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을 이루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가 수립할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을 통해, 장애인들이 이동, 교육, 노동, 문화, 체육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책임져주길 바란다. 장애인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

2022 장애인 관광환경모니터링 분석 보고

- 보조기기 웹 접근성 저하, 장애인 없는 정보 접근성

한지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주임연구원

1. 개요

일과 삶이 동시에 중시한다는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사람들은 일뿐만 아니라 삶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이다. 다양한 여가를 즐기고 여가의 일환으로 여행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사회적 현상으로 장애인도 여행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관광환경은 미흡하다. 장애인의 관광을 하기 위해선 모든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선 2015년부터 매년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열린 관광지’는 장애인, 노인, 영유아 등 모든 사람이 관광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된 관광지를 말한다.

열린 관광지는 기존에 있는 관광지를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환경을 구축한다. 물리적 환경에선 관광지 내 경사로, 턱 제거, 촉지도 설치 등이 포함된다. 사전 정보 제공도 포함되어 있어 무장애 관광 데이터베이스 및 여행 코스 개발 등이 있다. 물리적 환경과 마찬가지로 사이트도 정보의 양, 질, 웹 접근성 등 다양한 환경이 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는 열린 관광지의 사이트가 물리적 접근성처럼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모니터링했다.

〈2022 장애인 관광환경 모니터링 개요〉

구 분		내 용	
대상		2019 ~ 2021 열린 관광지 사이트 66곳	
조사기간		2022. 03. 01. ~ 04. 30	
조사자		시각장애인 2명	
모니 터링 기준	구분	웹 접근성	정보 접근성
	기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중 9개 항목 + 주 메뉴 및 본문 접근성	장애인 관광환경 모니터링 정보접근성 체크리스트
	대상 페이지	메인, 안내 및 소개, 새소식, 묻고답하기	안내 및 소개
	웹 브라우저	크롬	
	평가 점수 기준	100점 만점제	100점 만점 + 가산점

모니터링 대상은 2019년 ~ 2021년 열린 관광지 63곳이다. 모니터링 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조사자는 시각장애인 2명이다.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한 웹 브라우저는 '크롬'이며 웹 접근성 및 정보 접근성의 배점 기준은 백점 만점제를 기준으로 삼았다. 단, 정보 접근성은 관광환경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산점을 추가했다. 사이트는 잘 바뀌지는 않지만 특정 시즌, 기간, 조사자에 따라 웹 사이트의 조사 결과는 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진행했다.

2. 분석

웹 접근성은 장애유형 및 정도에 맞는 기능이 사이트별, 페이지별로 갖춰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규정 및 인증하고 있는 웹 접근성 품질인증 지침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기반으로 조사한다. 각 관광지의 웹 사이트는 다양한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웹 접근성은 세부 페이지를 선정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가장 먼저 보이고 다양한 정보를 압축하여 보여주는 '메인',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안내 및 소개', 관광지의 상황, 소식을 전하는 '새소식', 관광지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문의하는 '묻고 답하기' 이렇게 4개의 페이지를 세부 대상으로 선정했다. 4가지 페이지의 평균값을 해당 관광지 사이트의 최종 점수로 적용한다. 다만 새소식 및 묻고 답하기가 없을 경우엔 제외하고 진행했다.

〈열린 관광지 웹 접근성〉

(단위 : 점)

연번	세부분항	배점	최고점	최저점	평균
1	이미지 대체텍스트 제공	20	20	4.8	16.9
2	동영상 대체수단 제공	12	12	10	11.8
3	키보드 접근성 보장	20	20	10.8	19.2
4	반복영역 건너뛰기 링크 제공	6	6	0	3.7
5	페이지 및 프레임 제목 제공	6	6	3.7	5.7
6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8	8	6.5	7.6
7	논리적 순서의 콘텐츠 구성	6	6	6	6
8	온라인 서식 레이블 제공	12	12	9.5	11.6
9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10	10	9.6	10
10	주 메뉴 및 본문 접근성(감점문항)	-50	0	-37.5	-6
웹 접근성 점수		100	99.5	32	86.5

열린 관광지의 웹 접근성을 모니터링한 결과 평균 86.5점으로 58곳 중 39곳이 90점 이상을 받았다. 최고점이 99.5점으로 남원관광지 및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체험관이다. 가장 점수가 낮은 곳은 남이섬으로 32점이다. 각 세부분항별로 보면 총 10개의 문항으로 9개의 기본 문항과 1개의 감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9개의 기본 문항은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미지 대체 텍스트 제공'과 '키보드 접근성 보장'이다.

'이미지 대체 텍스트 제공'은 해당 페이지에서 그림 또는 사진을 설명하는 텍스트가 있는지 확인했다.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거나 텍스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미지의 개수에 따라 점수가 반영된다. 사이트 내 콘텐츠나 본문이 글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미지나 기타 파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스크린리더는 파일형식에 따라 글자가 아닌 콘텐츠는 대체 텍스트를 읽게 된다. 대체 텍스트가 없으면 읽어내지 못한다. 시각장애인이 사이트 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미지나 콘텐츠가 있을 때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어야 하는 이유다. 열린 관광지 사이트는 일부 메뉴를 제외하고 대부분 대체텍스트를 제공하고 있었다. 20점 만점인 곳이 횡성호수길 5구간, 순천만국가정원, 완도타워, 낙안읍성으로 대체텍스트가 완벽하게 반영되었다. 대상 관광지 사이트는 58곳 중 만점은 4곳이고 10점 이상은 53곳이다. 시각적으로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에겐 일부라고 할 수 있지만 스크린 리더기를 통해 접근하는 시각장애인에게 대체텍스트가 없는 만큼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하점인 아바이마을은 거의 모든 메뉴가 그림으로 되어 있음에도 대체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는다.

'키보드 접근성 보장'은 키보드로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컴퓨터 활용에서 인터넷 등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마우스이다. 시각장애인이거나 상지지체 장애인의 경우 마우스로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 때 대체 입력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키보드이다. 키보드의 'Tab'키를 사용하여 사이트 내 모든 콘텐츠, 내용에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또 키보드를 이용한 조작은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Tab'를 누를 때마다 초점이 이동되어야 한다. 마우스를 대신하는 키보드를 통한 접근이 안 된다면 전자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해당 문항에서는 키보드로 접근이 안 되는 링크 버튼이 몇 개인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진다. 58곳의 열린 관광지 중 43곳이 20점을 받았다. 20점을 못 받은 곳도 대부분 키보드를 통한 접근은 가능하다. 키보드의 초점이 움직이지 않거나 반영되지 않은 것이 감점으로 이어졌다. 키보드의 'Tab'를 누르면 초점도 함께 움직여야 하지만 화면 하단에 버튼과 연동되어 있는 사이트 주소만 바뀔 뿐 초점이 보이지 않는다. 가장 점수가 낮은 남이섬은 키보드를 통한 이동은 가능하지만 중간에 초점이 사라지는 링크 버튼의 수가 최대 10개는 넘는다는 것이다.

'주 메뉴 및 본문 접근성'은 감점 문항이다. 주 메뉴 및 본문에 접근이 가능한 건 기본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잘 갖춰져 있다고 해도 가점이 되지 않는 이유다. '이미지 대체 텍스트 제공'과 '키보드 접근성 보장'을 합한 문항이다. 'Tab'으로 주메뉴에 접근이 안 되거나 접근 가능해도 주메뉴 및 본문이 그림으로 되어 있고 대체텍스트가 없다면 감점 대상으로 간주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고 감점은 50점으로 다른 문항에서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주 메뉴와 본문에 접근할 수 없으면 점수가 낮다. 특히 주 메뉴를 인식할 수 없으면 아예 본문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주 메뉴를 인식하지 못하면 불가능으로 판단한다. 이 문항에선 스크린 리더기의 사용여부에 따라서도 점수가 상이하다. 리더기를 사용하지 않을 땐 이용에 문제가 없지만 리더기를 사용하면 본문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문제로 열린 관광지 사이트 중 아바이마을, 전주한옥마을 등 11곳이 해당 문항에서 25점이 감점되었다. 점수가 크게 차이날 정도로 당사자에 있어선 중요한 문제다.

-37.5점을 받은 남이섬의 경우 주메뉴의 접근은 불가능하다. 대체텍스트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여파로 메인페이지는 접근도 인식도 어렵다. 안내 및 소개와 새소식에선 단원마다 다른 결론을 내렸다. 스크린 리더기를 사용하는 단원은 키보드를 사용해도 대체텍스트가 없어 접근 및 인식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스크린리더를 사용하지 않는 단원은 키보드를 통해서 대부분은 접근할 수는 있지만 일부는 인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메인페이지는 -50점, 안내 및 소개, 새소식은 각각 -31.3점이 감점되었다.

〈열린 관광지 정보 접근성〉

(단위 : 점)

연번	세부문항		배점	최고점	최저점	평균
1	기본정보	안내정보	30	29	10	19.0
2	기본정보	대중교통	30	21	0	9.6
3	기본정보	편의시설	40	32	2	14.4
			100	82	12	43
4	가산점 (지원서비스 / 숙박시설 / 이용가능시설)			23	0	8.5
정보 접근성 점수				79	23	49.5

정보접근성은 별도의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진행했다. 체크리스트는 장애인이 사이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전정보 중 관광에 필요한 부분을 선정했다. 안내정보, 대중교통, 편의시설은 기본정보이다. 선택문항은 크게 세 가지로 지원서비스, 숙박시설, 이용 가능 시설이다. 숙박 및 이용 가능 시설은 해당 사이트 내 그리고 열린 관광지 내 이용 가능한 시설이 있는지 확인한다. 관광지 인근 식당, 숙박, 카페 등 이용시설은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는 했지만 열린 관광지에서 제공해야하는 필수 정보는 아니다. 하지만 사이트 내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곳도 있고 장애인의 관광환경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조사목록에 포함했다.

체크리스트는 기본 문항은 모니터링의 기초자료로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 100점이다. 체크리스트 상에는 총 12개이지만 ‘기본정보’의 ‘정보 위치’는 조사 결과 모두

동일하여 제외했으며 대중교통의 '도보 경로'는 가산점에 포함했다. 점수 기준은 정보가 없으면 0점, 제공 정도에 따라 비율을 점수로 환산한다. 단 관광지 유형 또는 관광환경에 따라 문항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는 감점할 기준이 없어 예외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관광지가 작은 공원이라면 장애인주차장은 필요없다. 하지만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해서 감점할 수 없다. 이럴 때는 예외로 인정해 점수에 반영한다.

선택문항은 관광지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가산점으로 분류하며 총 10문항이다. 선택문항도 12문항이지만 '숙박시설'은 총 6곳이고 정보도 적어 '숙박시설'분류를 한 개의 문항으로 간주했다. 이 외에는 각 문항별로 점수를 가지고 있으며 기본 문항과 다른 점은 가산점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면 기본적으로 2점이 가산되고 제공 정도에 따라 2점씩 추가 가산된다.

문항별로 보면 관광지에 대한 안내 정보는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이다. 문항별로 보면 먼저 장애인 관련 정보가 어떤 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정보의 위치에 따라 정보의 질이 달라지고 접근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하게 되었다. 기본 정보에는 소개, 이용시간, 이용요금, 기타 안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찾아오는 길에는 약도, 주소, 자차, 대중교통이 있다. 안내지도는 기본시설, 편의시설 등이 안내지도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안내 정보는 최고점이 29점으로 연곡솔향기캠핑장이다. 캠핑장에 대한 소개, 요금 등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찾아오는 길과 안내지도 또한 적절하게 제공하여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기본 정보는 모든 사이트가 관광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이용요금 및 이용시간은 관광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안내지도는 58곳 중 9곳이 아예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이곳을 포함한 36곳이 자세한 안내도를 제공하지 않는다. 찾아오는 길은 주소, 약도, 자차, 대중교통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대중교통의 유무에서 점수의 차이가 있다.

대중교통 문항에서는 관광지 사이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각 문제별로 승하차 위치, 이동시간, 기타 안내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기차나 지하철이 없거나 관광지 근처까지 가는 버스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예외로 적용하였다. 다만 택시 및 장애인 콜택시는 어느 지역에서나 탑승할 수 있고 환경적 영향을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예외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예외 점수는 적용하지 않았다.

대중교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곳은 총 8곳으로 기차, 버스, 택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반면 모든 대중교통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향가오토캠핑장을 포함한 7곳이다. 교통수단별로 보면 버스를 통한 접근이 가장 많이 제공되었다. 기차/지하철에 대한

정보는 13곳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택시 및 콜택시에 대한 정보는 중 12곳에서 연락처 또는 이동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모니터링 대상지가 열린 관광지이기에 장애인과 관련된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 편의시설은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주차장, 관광안내센터 등 관광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해당된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가장 기본적인 시설은 장애인 화장실, 휠체어, 기타 편의시설 등이 있다. 장애인 주차장에는 위치, 요금, 기타 안내사항이 포함되었다. 관광안내센터에는 위치, 연락처, 제공서비스, 그밖에 안내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용가능시설에는 식당, 카페, 체험, 이용시설이 포함되었다. 이 문항에서도 관광지의 환경에 따라 예외 점수를 적용하였다.

열린 관광지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편의시설 평균 점수는 14.4점이다. 즉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 기본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는 장애인 화장실 또는 휠체어 대여소만 안내되었다. 장애인 주차장도 58곳 중 18곳만이 유무를 알 수 있었다. 주차 가능 수를 알려주는 곳은 완도타워뿐이다. 관광안내센터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이 제공했지만 상세 정보는 알 수 없었다. 이용 가능 시설에 대해서는 10곳이 관광지 내 시설이 있다고 안내했다.

장애인이 관광하기 위해선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관광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원 서비스에는 휠체어 대여, 음성 해설기기 대여 또는 해설사, 수어지원이 있다. 숙박시설은 숙소 기본 정보, 출입구, 객실 내 이동, 화장실이 포함된다. 이용시설에는 식당, 카페 및 판매시설, 체험시설, 이용시설이 있다. 또한 분류상 대중교통에 포함되지만 대중교통을 안내할 때 도보 경로는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도보 경로를 제공하는 곳은 선택항목과 동일하게 가산점으로 모니터링 결과에 반영하였다.

가산점인 선택항목을 보면 평균 8.5점으로 낮은 점수다. 총 58곳 중 46곳이 가산점을 받았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전주 한옥마을로 휠체어 대여가 가능하고 해설사가 있으며 체험 및 이용시설에 대한 기본 정보가 있어 23점이 가산되었다. 선택항목별로 보면 해설사를 지원하는 곳이 30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 중 순천만국가정원이 해설사 지원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휠체어 대여는 12곳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도보 경로는 남이섬을 포함한 10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숙박시설은 6곳이 있지만 열린 관광지 사이트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2곳뿐이었다. 이용 가능 시설에선 체험시설이 10곳, 이용시설 6곳, 식당 3곳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 하지만 유무, 프로그램 등 기본 정보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카페 및 판매시설, 음성해설기기, 수어지원은 한 건도 없다.

3. 분석 결과

웹 접근성은 다행히 눈에 보이는 부분을 잘 구성되어 있다.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소매업, 숙박업, 교육 서비스업 등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조사한 결과 평균 60.8점으로 나타났다. 물론 조사 환경 및 조사 방식, 가점 방식 등이 달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점수만 놓고 보면 평균 86.5점인 열린 관광지가 다른 사이트보다 웹 접근성이 높다는 걸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스크린 리더기 등 보조기기를 통한 웹 접근성이다. 대표적인 예가 대체텍스트이다. 이 문제는 링크 버튼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제공되지 않으면 감점되는 ‘주메뉴 및 본문 접근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본문은 링크가 아니기 때문에 키보드를 통한 접근은 할 수 없고 오픈와스를 통해서도 본문이 어떤 형식인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유관 상으로 봤을 땐 충분히 접근 가능한 것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스크린 리더기를 사용하면 달라진다. 스크린 리더기는 이미지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본문이 이미지로 되어 있다면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아무리 다른 웹 접근성에서 점수가 높게 나와도 주메뉴의 대체텍스트가 없고 본문이 이미지로 되어 있다면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접근할 수 없는 사이트로 인식된다. 웹 접근성 환경을 조성할 때 보이는 부분만 신경쓰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 리더기를 통한 접근에도 주의를 해야하며 앞으로 웹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는 건 정보 접근성이다. 열린 관광지 사이트에선 관광지에 대한 기본정보만 제공되고 있다. 열린 관광지에 대한 정보는 너무 없다. 사람들이 관광하러 갈 때 사이트를 먼저 방문하는 이유는 관광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사전에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알기 위해서다. 모니터링을 진행한 단원은 열린 관광지 사이트를 조사를 하면서 관광지에 대해 알게 되었고 방문하고 싶은 곳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서 아쉬웠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보고 방문하게 된다면 더 좋은 관광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처럼 장애인이 관광에 대한 욕구가 있고 방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사이트의 정보 정도에 따라 관광활동에 영향을 준다. 열린 관광지라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하고 더 나아가 지원서비스, 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초적인 안내 정보만 결과에 반영하고 선택항목은 가산점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58곳의 평균 점수가 50점이 안 된다. 열린 관광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장애인이 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물론 정보가 없다면 문의해서 정보를 파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장애인도 문의하지 않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4. 결론

이렇게 웹 접근성과 정보 접근성과 큰 차이를 보이는 건 기준의 유무이다. 현재 접근권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 안에는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전자정보 접근성도 포함된다. 다만 이 두 법은 범위가 넓어 세부 기준을 잡을 수는 없다. 전자정보 접근성에 대해 기준이 될 수 있는 법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있다. 하지만 정보 접근성보다는 웹 접근성에 치중되어 있다. 해당 법에선 웹 접근성 품질인증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법적 근거 및 기준이 있어 웹 접근성은 80점 이상의 점수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정보는 종류도 다양하고 범위도 넓어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 하지만 최소한 열린 관광지 사이트에 한해서라도 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본 정보는 제공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및 기준과 함께 필요한 것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광지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그리고 꾸준히 제공되고 있는지 접근은 가능한지 지속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아무리 웹 접근성이 잘되어 있어도 정보 접근성이 완벽해도 꾸준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접근성은 점점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열린 관광지 사이트로써 언제 장애인이 사이트에 방문해도 불편함 없이 이용 가능해야 하며 운영주체가 달라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장애인이 어떤 사이트를 방문해도 쉽게 사전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열린 관광지 사이트라 할 수 있다.

모니터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개선활동까지 이어져야 한다. 모니터링에서 멈추면 열린 관광지 사이트에 적용될 수 없고 장애인의 전자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개선될 수 없다. 개선활동에는 크게 두 가지로 언론, SNS 등에 보도자료를 올려 장애인 관광환경 및 정보 접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방법과 열린 관광지, 지자체 등 사이트 운영주체에 개선을 요청하는 직접적인 개선활동이 있다.

개선활동은 한 번 진행한다고 해서 바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활동이 필요하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는 이번 모니터링을 하면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개선활동을 진행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또한 웹 접근성 또는 정보 접근성 점수가 낮은 열린 관광지 사이트에 개선을 요청하고자 한다. 개선을 요청한 후 2023년 초 한 번 더 확인하여 개선되었는지 확인하여 추후에도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진행한다. 이렇게 지속적인 개선활동이 이어진다면 느리지만 점차 장애인 관광환경 및 정보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언론 및 방송모니터링 3~6월 분석 결과

- 소수보다 다수, 여전한 미디어의 이슈바라기 -

한지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주임연구원

미디어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 사회는 장애인을 인식한다. 하지만 단순히 보도만 해서는 안 된다. 정보를 보도하는 관점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단어 하나, 뉘앙스 하나에 따라 사회는 영향을 받고 크게 요동친다. 진실이 거짓이 될 수 있고 인식을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꿀 수 있다. 미디어의 행동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는 뉘년 언론 및 방송모니터링'을 통해 미디어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 8조 '인식 제고'의 취지에 맞게 장애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 비하표현 등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개선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인식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2022년 언론 및 방송모니터링은 3월부터 6월까지 언론(신문) 및 방송에서 보도, 방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언론모니터링은 국내 10대 중앙 일간지로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를 모니터링한다. 범위는 인터넷 기사는 제외하고 지면 신문의 모든 기사를 대상으로 한다.

방송모니터링은 총 9개의 방송사로 지상파 SBS, KBS, MBC, EBS, 종편방송 JTBC, MBN, TV조선, 채널A, 보도전문채널 YTN이다. 방송모니터링의 모니터링 범위는 뉴스, 시사, 드라마, 예능으로 방송사별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하였다. 지상파 및 JTBC는 뉴스, 시사, 드라마, 예능을 진행하였으며 TV조선, MBN, 채널A는 드라마가 지속적으로 방영되지 않아 드라마를 제외하고 뉴스, 시사, 예능을 진행했다. YTN은 보도전문채널로 뉴스만 모니터링한다. 예능 및 드라마에서는 장애 관련 내용 또는 표현이 없어 이번 리포트에선 제외했다.

3월 ~ 6월에는 많은 이슈가 있었다. 3월 4일부터 3월 13일까지 2022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이 개최되었으며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었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시위는 2021년 12월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슈가 되기 시작한 건 3월 중순 서울메트로의 대응지침이 공개된 후부터다. 이후 이준석 국민의 힘 당대표가 이동권 시위를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확산되고 4월 13일 공개토론회에 이어 6월까지 이슈가 지속되었다. 그리고 4월에는 2일 '세계 자폐인의 날', 20일 '장애인의 날'이 있다. 미디어에서는 많은 이슈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했다.

방송사별, 언론사별 장애 관련 기사 수는 총 1,293건으로 방송이 239건, 언론은 1,054건이 보도되었다. 먼저 방송사별로 보면 JTBC가 68건으로 가장 많이 보도했으며 KBS 47건, MBC 29건, MBN 및 YTN 27건, SBS 24건, 채널A 9건, EBS 7건, TV조선 1건순으로 보도되었다. 언론사별로 구분했을 때 한겨레가 183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경향신문 163건, 한국일보 121건, 동아일보 105건, 세계일보 및 국민일보 97건, 서울신문 94건, 조선일보 84건, 문화일보 56건, 중앙일보 54건으로 나타났다.

〈방송사, 언론사별 장애 관련 기사(2022. 3~6)〉

(단위 : 건)

	구분	3월	4월	5월	6월	계
방송	SBS	8	12	4	0	24
	KBS	25	12	7	3	47
	MBC	10	12	4	3	29
	EBS	0	3	4	0	7
	TV조선	0	1	0	0	1
	JTBC	26	24	12	6	68
	MBN	8	9	7	3	27
	채널A	2	3	4	0	9
	YTN	11	11	4	1	27
	계	90	87	46	16	239
언론 (신문)	경향신문	43	67	31	22	163
	국민일보	27	35	16	19	97
	동아일보	32	32	28	13	105
	문화일보	7	23	16	10	56
	서울신문	35	34	15	10	94
	세계일보	22	41	16	18	97
	조선일보	29	24	18	13	84
	중앙일보	10	23	9	12	54
	한겨레	51	84	27	21	183
	한국일보	34	41	28	18	121
	계	290	404	204	156	1,054
총계	380	491	253	174	1,293	

보도된 기사의 내용을 노동/취업, 교육/학습, 접근성/편의, 스포츠/레저, 문화/관광/예술, 보건/재활, 소득/생계, 자립/탈시설, 제도/행정, 인권/권리, 인물/인터뷰, 자선/봉사, 기타 총 13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했다.

언론 및 방송을 통합해 보면 인권/권리가 462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스포츠/레저 130건, 문화/관광/예술 113건, 인물/인터뷰 90건, 보건/재활 89건, 기타 82건, 접근성/편의 71건, 제도/행정 66건, 자립/탈시설 61건, 자선/봉사 50건, 노동/취업 34건, 교육/학습 25건, 소득/생계 20건 순으로 이어졌다.

매체별로 보면 방송은 인권/권리가 77건 보도되었으며 제도/행정 40건, 기타 38건, 인물/인터뷰 26건, 스포츠/레저 24건, 접근성/편의 19건, 소득/생계 7건 방영되었다. 이 외에 노동/취업 4건, 문화/관광/예술 2건, 교육/학습 및 보건/재활 1건, 자립/탈시설 및 자선/봉사는 한 건도 보도되지 않았다.

〈장애 관련 기사 내용 - 방송(2022. 3~6)〉

(단위: 건)

구분	SBS	KBS	MBC	EBS	TV조선	JTBC	MBN	채널A	YTN	합계
노동 취업	0	1	1	0	0	1	1	0	0	4
교육 학습	0	0	0	1	0	0	0	0	0	1
접근성 편의	3	2	4	0	1	1	3	4	1	19
스포츠 레저	0	20	1	0	0	2	1	0	0	24
문화 관광 예술	0	0	1	0	0	0	1	0	0	2
보건 재활	0	1	0	0	0	0	0	0	0	1
소득 생계	0	0	6	0	0	1	0	0	0	7
자립 탈시설	0	0	0	0	0	0	0	0	0	0
제도 행정	6	7	3	2	0	13	4	0	5	40
인권 권리	8	7	13	2	0	24	9	4	10	77
인물 인터뷰	2	9	0	0	0	14	1	0	0	26
자선 봉사	0	0	0	0	0	0	0	0	0	0
기타	5	0	0	2	0	12	7	1	11	38
합계	24	47	29	7	1	68	27	9	27	239

10대 일간지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인권/권리가 385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문화/관광/예술 111건, 스포츠/레저가 106건, 보건/재활 88건, 인물/인터뷰 64건, 자립/탈시설 61건, 접근성/편의 52건, 자선/봉사 50건, 기타 44건, 노동/취업 30건, 제도/행정 26건, 교육/학습 24건, 소득/생계 13건순이다.

〈장애 관련 기사 내용 - 언론(2022. 3~6)〉

(단위: 건)

구분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계
노동 취업	2	5	9	1	1	6	2	2	2	0	30
교육 학습	3	3	4	0	4	0	1	1	5	3	24
접근성/편의	8	4	7	4	8	6	4	2	6	3	52
스포츠 레저	6	7	13	6	12	10	20	2	15	15	106
문화 관광 예술	16	7	13	5	6	10	8	11	19	16	111
보건 재활	12	8	14	4	8	7	9	6	7	13	88
소득 생계	2	1	0	1	0	5	0	1	2	1	13
자립 탈시설	12	5	3	2	9	8	1	1	11	9	61
제도 행정	4	1	4	1	2	4	3	0	5	2	26
인권 권리	83	30	28	18	30	23	20	16	89	48	385
인물 인터뷰	5	12	3	7	3	4	7	6	12	5	64
자선 봉사	4	9	4	6	5	7	4	3	5	3	50
기타	6	5	3	1	6	7	5	3	5	3	44
계	163	97	105	56	94	97	84	54	183	121	1,054

언론과 방송에 따라 보도하는 주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보도된 건 인권/권리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내용이 많다. 장애인 이동권 시위 관련 기사는 총 244건으로 장애 관련 기사 1,293건의 18.9%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스포츠/레저가 130건으로 '뽀빠이동 동계패럴림픽'이 중심이 되었다.

문화/관광/예술은 거의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으로 영화 ‘코다’를 중심으로 청각장애인에 대한 보도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동권의 여파로 미국의 장애인 인권활동가였던 ‘주디스 휴먼’이 재조명되어 이에 대한 저서 등이 기사화되었다. 기타에선 사건/사고에 대한 보도가 많았다. 발달장애아동을 둔 부모가 자녀를 살해했다는 보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사고 등 많은 보도가 이어졌다. 하지만 단순히 사건, 사고가 있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룰 뿐 대안이나 문제를 제기하는 보도는 적었다.

장애인 이동권, 무관심 ↔ 폭발적 관심

계기는 ‘정치인의 반응’

장애인 이동권이 처음부터 이슈가 된 건 아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시위는 2021년 12월부터 시작했지만 미디어에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3월 중순, 서울메트로에서 장애인 시위에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이 기사화되면서 모든 미디어 매체에서 이동권 시위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슈화가 된 결정적 계기는 3월 25일 이준석 국민의 힘 당대표가 장애인단체가 시민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발언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도된 이동권과 관련 기사는 291건의 83.8%인 244건이다.

기사 내용을 보면 대부분 시위를 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이준석 당대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반응 및 대응에 대해 보도했다. 기사의 대부분은 이준석 당대표의 행동이 잘못되었고 장애인 단체가 시위를 할 수 밖에 없음에 대해 보도한다. 더 나아가 장애인의 이동권의 필요성, 정책 개선 등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선 장애인의 인권 및 권리를 미디어가 인식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전히 장애인을 비하하고 자극적인 표현을 쓰는 매체도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미디어의 대응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먼저 너무 시위 및 반응에만 집중하는 편향적 보도이다. 3월에는 전반적인 이동권이 아닌 시위와 정치권의 반응에만 집중되었다. 4월에는 전반적인 이동권에 대해 보도하는 내용도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시위와 반응 및 대응에 치중되어 있다. 4월 13일에 이준석 당대표와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가 만나 토론회를 가졌음에도 언론에서 6건, 방송은 3건만 보도되었을 뿐이다. 두 번째는 이슈가 있을 때만 보도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동권 시위는 2021년 12월부터 시작되었다. 미디어가 집중 보도한 건 3월 28일부터 4월 말까지만이다. 토론회가 끝나고 장애인의 날이 지나니 언론의 반응도, 정치권의 반응도 사라졌다. 5월에 용산 대통령실 앞 시위나 6월에 다시 시작하면서 서울시 경찰청장과 대치를 해도 언론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다른 이슈에 가려진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2022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은 3월 4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었다. 패럴림픽에 대한 기사는 기간을 정해 3월 1일부터 16일까지 보도한 기사를 중점적으로 보았다. 해당 기간동안 미디어에서 보도한 패럴림픽 기사는 89건이다. 올림픽과 동등한 경기지만 보도율이 너무 낮다.

이번 패럴림픽은 코로나 속에서 치러지는 두 번째 패럴림픽이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에 개최되었고 국내에선 제 20대 대선이 있었다. 큰 이슈가 여러 개가 겹치면서 패럴림픽에 대한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특히 방송은 심각했다. 공영방송인 KBS 20건, JTBC와 MBN 1건만 제외하고 그 어떤 곳도 패럴림픽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내용 부분에서도 전체 89건 중 19.1%인 17건이 우크라이나 선수에 대한 내용이거나 러시아가 출전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종목별 보도는 44건에 그쳤다.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은 무관심과 사회적 이슈에 가려졌다. 종목은 6종목이지만 세부분류로 하면 많은 경기가 있고 32명의 선수들이 출전했음에도 이번 패럴림픽은 공영방송에서만 보도되고 언론(신문)에서도 보도하는 수가 줄었다. 물론 사회적 이슈에 따라 보도의 양이 줄어들 수는 있다. 하지만 패럴림픽도 올림픽과 같은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기 전에 같은 태극마크를 달고 한국을 대표해서 나간 선수들이다. 그렇다면 미디어에서도 동등하게 대우하고 동등하게 보도해야 하지 않을까.

대선 및 지방선거에선 장애인 관련 공약 및 정책 기사 無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고 여전히 사회에서 배제되어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제 20대 대통령 선거와 8회 지방선거이다. 2022년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었다. 대통령 선거에는 총 12명이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그 중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선거 유세기간은 2022년 2월 15일부터 선거 하루 전날인 3월 8일까지이다. 그 중 선거운동 막바지인 3월 1일부터 선거 당일인 3월 9일까지는 주요 정당의 각 후보자별 장애 관련 공약이 있는지 그리고 당선이 확정된 3월 10일 이후부터 31일까지는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해설과 다음 정부를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복지 분야 특히 장애인 분야에 대한 보도가 있는지 확인했다.

결과 장애인 관련 공약에 대한 보도는 없다. 최악의 비호감 선거, 네거티브 선거로 불릴 만큼 대선 후보자가 토론이나 선거유세 속에서 본인의 정책에 대한 언급은 적고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데 집중했기 때문이다. 후보자가 공약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공약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미디어의 역할이지만 미디어 역시 후보의 공약이 아닌 상대방의 공격에 치중해서 보도했다. 윤석열 당시 후보자를 제외한 두 명의 후보자는 장애인에 대한 공약이 있었음에도 미디어를 통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 장애인 정책에 대한 보도는 방송은 한 건도 없었으며 언론은 4월 20일 경향신문에서 당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한 기사만 있을 뿐이다. 대선에 장애인 관련 정책에 대한 기사가 없는데 지방선거에 있을까. 없다. 연이어 큰 선거가 두 번 있지만 어떤 선거에서도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다.

같은 지정일, 다른 반응, 세계 자폐인의 날과 장애인의 날

4월 20일, 국가에서 지정한 ‘장애인의 날’이다. 이 때는 장애계에서 전국적으로 집회나 행사가 개최된다. 그래서일까. 매년 미디어에선 4월 20일 전후로 장애계의 행사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정책, 대안 등을 보도한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3~6월의 장애 관련 기사 수는 일 평균 방송이 2개, 언론이 8개이지만 4월 19일부터 21일까지는 방송 12건, 언론 59건으로 6~7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기사의 내용은 단연 인권/권리 및 제도/행정이다. 특히 이번 장애인의 날에는 이동권에 대한 기사가 방송이 42.9%, 언론이 23.1%를 차지했다. 장애인의 날과 이동권 이슈가 겹쳐 기사가 급증한 것이다. 이동권에 대한 기사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장애인 인권에 대한 보도와 장애인의 날을 알리는 보도도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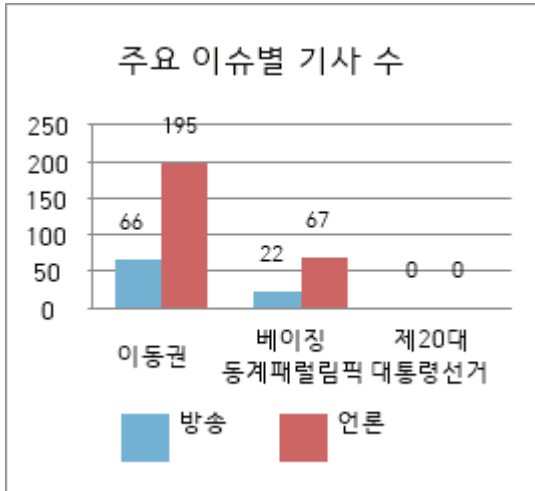
세계 자폐인의 날은 4월 2일이다. 하지만 미디어의 반응은 장애인의 날과 다르다. 4월 1일부터 3일까지 발달장애인 관련 기사의 수는 방송은 없으며 언론은 4건뿐 이었다. 그 중 한 건이 4월 1일에 문화일보에서 세계 명소가 ‘세계 자폐인의 날’을 상징하는 푸른색으로 물들었다는 내용의 보도만이 있을 뿐이었다. 같은 장애인 관련 지정일이고 ‘이해와 인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행사가 진행된다. 같지만 상반되는 관심과 반응을 보인다.

4월에는 장애인의 날이 있어서 다른 달보다 장애인에 대한 보도가 많다. 하지만 보도되는 내용은 각 장애유형이 아닌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범분야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4월뿐만 아니라 3~6월의 보도 내용도 마찬가지다. 전반적인 장애계의 이슈를 다룰 뿐 각 장애유형별 쟁점을 다루는 기사는 많지 않다. 물론 전반적인 이슈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다. 그와 동일하게 유형별 보도도 필요하다. 장애인이라고 다 똑같지 않으며 필요한 지원이 다르고 욕구도 다르다. 이런 부분을 미디어에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사회도 인식하지 못한다.

**결론. 소수보다 다수, 사회에서 소외되는 장애인
사회적 이슈일수록 소수와 다수 함께 보도되어야**

이런 미디어의 행동을 보면 여전히 장애인을 소수자로 보고 있고 사회의 관심 밖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선에선 제외되고 올림픽과 동등한 경기인 패럴림픽에선 보도율이 현저하게 낮다.

같은 국민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은 배제되고 있다. 다수의 입장에서만 사회적 행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정작 소수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보도되지 않는 것이다.



미디어에서 장애계를 보는 건 이슈가 있을 때 뿐이다. 이동권과 장애인의 날이 대표적이다. 아무리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소리쳐도 듣지도 않고 보도하지 않았던 미디어가 야당의 당대표가 발언하고 나서 태도를 바꿔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다. ‘장애인의 날’도 마찬가지다. 평소엔 장애인 관련 이슈에 대해 보도하는 등 마는 등 하던 미디어가 ‘장애인의 날’만 되면 기사를 보도한다.

같은 장애계 이슈에 대한 기사도 아쉬움이 남는다. 장애인 관련 이슈는 해당 시기에 가장 시선을 모은 분야만 보도되는 경향이 강하다. 게다가 ‘수박 겉핥기’식의 기사가 많아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장애유형별 기사도 같다. 모든 장애유형을 포함하는 범분야도 있지만 장애유형별 이슈도 분명히 존재한다. 미디어는 장애인에 대한 보도 중 65.4%를 범분야에 집중했다. 장애유형별 기사는 40%로 되지 않는다. 장애인에 대해 한 발자국 떨어진 시점에서 보도하고 있을 뿐 장애유형별로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개선되어야 하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는 것과 같다.

같은 장애계 이슈에 대한 기사도

물론 미디어가 항상 제자리걸음인 건 아니다. 이전에 비해선 장애와 관련된 기사의 양이 증가했고 미디어에서 부정적인 표현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걸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케이블TV의 드라마에 발달장애인이 출연해 연기함으로 인해 이슈가 되고 있다. 해당 드라마에선 발달장애인을 미화하려고 하지도 않고 불쌍한 모습으로 보이지도 않았다. 발달장애인 한 사람으로써 겪고 있는 문제, 사회적 시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드라마에 담아냈다. 광고에 장애인을 위한 자막이 포함되거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출연하는 어린이 프로그램 등 미디어도 점차 변해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이슈에 대해선 여전히 반응이 느리다. 현재 장애인이 겪고 있는 문제가 뭔지,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관심이 없다가 문제가 발생하고 이슈가 되면 그제서야 바라본다. 마치 해바라기가 오로지 태양만 바라보듯 미디어의 시선은 이슈에만 집중되어 있다. 전체만 집중해서 보면 세부적인 모습과 환경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미디어는 정작 봐야할 문제를 보지 못한다. 미디어가 인지하지 못하면 사회도 인지하지 못한다. 결과 일시적인 관심에 그친다.

“가장 끔찍한 빈곤은 외로움과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다.” - 마더 테레사

마더테레사의 고독에 대한 명언이다. 이런 생각은 사회에도 적용된다. 아무리 제도나 지원이 늘어난다 해도 사회 속에서 제외된다면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장애인들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주장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걸 끊임없이 얘기해 왔다. 하지만 지금도 사회는 장애인을 소수로 인식하고 사회적 이슈에서 제외되고 있다. 미디어도 마찬가지다. 일시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끈다고 해도 이건 진정한 관심이 아니다. 이번 이슈가 사라지면 다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흐려진다. 이슈라는 태양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변도 둘러보고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전 국민의 5%라 하면 적어보일 수 있다. 하지만 2,644,700명(2021년 기준)이 절대 적은 수가 아니다. 시대에 따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어떤 분야든 이슈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미디어가 이슈에 치중하다 보면 정작 사회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 쉽다. 좀 더 시야를 넓혀 주위를 둘러보기 바란다. 이슈를 벗어나 다양한 쟁점과 소수의 의견도 함께 보도한다면 장애인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슈포착



+

- 장애인권리협약 2·3차 국가보고서 심의와 시민사회 대응
- 편집부

장애인권리협약 2·3차 국가보고서 심의와 시민사회 대응

편집부

개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는 제27차 회기(2022년 8월 15일-9월 9일, 스위스 제네바) 중 한국정부 2·3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진행한다. 해당 기간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뉴질랜드, 방글라데시, 라오스, 싱가포르의 국가보고서 심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미국과의 미팅도 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제35조에 따라 협약 당사국들이 제출한 보고서의 검토 외에도 위원회의 조직관련 의제, 위원회의 26차 회기 이후 수행한 위원회 활동에 대한 의장의 보고, 협약 제35조에 따른 협약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 다른 유엔 기구는 물론 전문 기관 및 조직과의 협력, 일반논평, 선택의정서에 따른 활동 관련 의제를 다룬다.

시민사회는 제27차 회기 2주차에 제네바로 출국 해 위원들과의 비공개 미팅을 통해 국가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전달하고 정부 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질의에 반영할 내용을 요청할 방침이며, 일본과 뉴질랜드 국가보고서 심의도 참관할 예정이다. 3주차에 진행되는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 기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는 공개발언을 통해 정부 보고서에 대한 객관적이고 당사자 관점의 견해를 피력하게 된다. 시민사회는 귀국해 제네바 활동 결과 보고 및 후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간소화된 국가보고서 심의절차에 따라 2·3차 국가보고서는 CRPD가 대한민국 정부에 전달한 34개의 보고 전 쟁점목록(LoIPR)에 기초해 작성되어 포괄성 미흡하다. 더구나 34개 쟁점목록에는 1차 보고서 심의결과 정부에 권고한 최종견해 이행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2·3차 국가보고서 쟁점목록 확정절차에서 시민사회가 CRPD에 제안한 쟁점목록과 국가보고서가 다루고 있는 이슈의 범주도 다소 차이가 있다.

더구나 국가보고서의 보고기간이 2011년부터 2018년으로, 심의가 진행되는 시기와 2년의 간극이 존재한다. 지난 6월 NGO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시민사회에서 장애인권리위원회와 소통을 통해서 제기하고자 하는 이슈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A. 목적 및 일반적 의무(Purpose and general obligations)	
전문,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개념의 확장, 권리 관점으로 접근(법률상 개념 검토 및 개선) - 통계 및 자료수집으로 연계 - 권리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연계 - 장애인 복지서비스에서 정신장애인 배제: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후속 조치 - 선택의정서 비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구제 메커니즘의 확대
일반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주류화(정책, 예산, 참여) - 장애인 정책 적용 대상 및 범위 확대 - 유니버설디자인
B. 구체적 권리(Specific rights)	
평등 및 비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한 불공정 담론 인식 확산 - 제도화 진전: 인권정책기본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장애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여성 피해자 센터 - 재생산권(자기결정권) - 고용 및 경제활동
장애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교육, 통합놀이터 - 학교현장의 아동 간 폭력, 보육/교육/보호시설 확대 예방 - 자기결정권: 부모교육(지원과 교육의무 연계)
인식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장애인을 대상화, 계몽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관행 개선 - CRPD 캠페인과 교육(입법, 행정, 사법) 체계화 - 혐오표현과 편견 고착
법 앞의 동등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보험)서비스(자필서명-시각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 성년후견인제도(의사결정 대체에서 조력으로)
사법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결문, 결정문에 대한 시각장애인 접근성 - 수어통역, 입회 제도의 실효성 - 판결절차에서 장차법 제48조 긴급구제 조치에 대한 법원의 인식부족 - 차별행위 판결의 효과성: 손해배상액 규모, 소송비용, 단체소송 도입 등

신체의 자유, 안전, 고문, 착취, 학대로부터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동의입원제도의 자기결정권 침해 - 정신장애인 강제치료 - 발달장애 아동 학대 - 노동 착취 - 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쉼터 운영 등) 개선 - 탈시설 및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과 연계
생명권, 개인의 온전함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타살율과 온정적인 법원 판결 - COVID-19 코호트 격리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동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에 맡겨진 탈시설,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매칭 실효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교, 특수학급 Vs. 통합교육 - 발달장애 학생 교육현장 지원(특수교사 부족) - 점자도서(교과서) 보급 적시성 문제
유보 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상법 732조
시·청각 장애인 접근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오스크: 디지털 환경변화 - 방송(일반, 재난): 생명과 안전 - 문화, 체육, 오락, 관광: 문화, 예술, 관광 등의 향유 - 투표소: 참정권
근로 및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 정신장애인을 배제하는 피후견인 제도: 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 - 고용안정성, 노동환경(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C. 구체적 의무(Specific obligations)	
장애인의 삶이 보이는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가 없는 통계의 문제: 장애인 정책의 신뢰성
효과적인 국내 이행과 모니터링 독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정치 환경 변화로부터 독립 - 장애인 당사자(단체, 권리옹호자 등) 참여: 효과성 문제

시민사회의 비판적 견해 : 일반조항

전문(Preamble)

- 장애정책이 다양한 유형의 장애당사자 및 장애이슈를 포괄할 수 있도록, 의료모델에 입각한 고정적이고 폐쇄적인 법정 장애개념을 사회·환경적 요인을 포괄하는 등 진화·확대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규정 개선, 현재는 일정기간 긴급 지원 가능)

- 「장애인복지법」제15조 폐지는 정신장애인이 장애관련 법률에서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제약 없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절차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그룹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시청각 장애 등 중복장애와 미등록 장애인의 취약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선진국처럼 장애분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제가 폐지되어야 한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구제는 적극적으로 확대되어 하며, 서비스 판정절차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Article 1. Purpose(목적)

-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완전하고도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장애인 정책과 복지서비스 적용 기준은 장애등급 또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참여를 제약받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에 맞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관행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 또한 복지서비스의 소비자인 장애인이 서비스 총량 안에서 자유롭게 서비스 유형과 유형별 서비스 양을 조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Article 3. General principles(일반원칙)

- 향후 국내 법령의 제·개정 절차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제도를 도입해, 보다 적극적으로 협약에서 요구하는 일반원칙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법령의 제·개정 관행을 구축하여야 한다.

Article 4. General obligations(일반의무)

-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이행 강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인권정책기본법 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 입법주체들에게 법률안의 취지와 배경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이 요구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법령 제/개정 절차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제도화 해, 상시적으로 인권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인권영향평가 세부지표에 장애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해 장애인의 인권영향을 고려해 모든 법령의 제·개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 절차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현재 정부 및 국회가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모두에 장애영향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비판적 견해 : 실제적 권리 조항

Article 5.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평등 및 비차별)

- 법원 판결에서 차별행위 중지 및 시정을 강제하는 적극적 조치 인용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 권리구제 수단은 차별피해자 입장에서 판결 전에 임시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적극적 조치가 내려질 경우 그 혜택이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 모두에게까지 미친다는 면에서 차별개선 파급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대표소송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판례분석 결과 재판부는 48조 2항을 임의규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재판부 스스로 차별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재량권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인용할 때 활성화될 수 있다. 하지만 원고 측 대리인 입장에서 적극적 조치 청구취지를 쓰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이 구제 수단에 대한 법원 인식수준은 높지 않다. 법원은 내부세미나를 통해 인식을 확산시키고, 복지부는 적극적 조치 판결의 의미를 홍보하고 법무부, 공익변호사 그룹과 토론회 등을 개최해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

- 신체적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소액이다. 반면 패소는 물론 일부 승소의 경우에도 소송비용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피해자가 복잡하게 소송을 할 유인이 없다. 피해자는 소송을 기피하고 차별은 개선되지 않고 방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차별 피해자 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송(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장차법 제8조는 차별을 방지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다. 제8조를 보완해 정당한 편의제공 조치 외 피해자 권리구제 지원 일환으로 소송지원 기금 마련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정부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

- 또한 장애인 차별행위는 대부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복적, 계속적으로 진행된다. 반면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소액이라 피해자의 소송유인이 없다. 집단적 분쟁의 1회적 해결 방식이 요구된다. 집단소송과 같은 절차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장차법은 제47조에서 차별이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책임을 상대방에게

배분하고 있어,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이나 증권분야 집단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입증책임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요건 완화로 4개의 사정명령 사례가 추가되었으며, 국회에서 발의한 <권리보장법안> 내에는 단체소송을 포함하고 있다.

Article 8. Awareness-raising(인식제고)

- 현행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에 대한 이해, 장애 관련 국내법령 준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령이 장애인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협약에서 요구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는 관점에서 한계가 있다. 인식개선 교육은 협약의 취지와 목적, 내용에 기초해 추진되어야 한다.

- 특히, 법령 제·개정과 판결 절차에서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입법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국내법령을 넘어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에 기초해 제공되어야 한다.

- 정치권의 장애 비하 발언이 문제되고 있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협약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Article 9. Accessibility(접근성)

- 시설 및 정보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보장 정책의 수직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일자 및 규모 기준, 공공기관 여부와 상관없이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 서울시의 경우 근린 편의시설 및 관광지를 위주로 접근성 개선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이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BF인증 기준이 인증기관마다 다르고 통일되어 있지 않다. 전국 700만 건물 중에 2.45% 수준만 인증을 받았으며, 서울의 경우 약국 접근성 1% 수준에 그치고 있어 법적용 범위에 대한 점진적 확대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Article 10. Right to life(생명권)

- 장애인이 온전한 존재로 존중받고, 장애여성의 재생산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장애 또는 관련 유전을 이유로 한 생명 경시풍토는 개선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그 자체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나 홍보 콘텐츠에 포함시키고, 유전을 이유로 장애인 가정 출산에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과 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캠페인이 요구되고 있다.

• 다만,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를 규정함에 있어, 장애 또는 유전적 이유를 명시함에 따라 합법적인 행위로 인식되고 있어 관련 내용의 삭제는 필요하다.

Article 11. Situations of risk and humanitarian emergencies(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 재난대피 시설은 대부분 지하에 위치한 반면, 지하주차장이 없는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좁은 통로의 계단식 병커 형식이 많고,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는 지하 대피시설도 여전히 많다. 휠체어 사용자의 대피시설 접근성 수준을 전수 조사해 대체 대피시설을 마련하거나 접근성 개선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 전국 24,000여 개의 대피시설 중 휠체어 이용자 접근성이 보장된 대피소는 하나도 없다.

• 기후변화에 취약한 장애인에 대한 통계와 분석이 필요하다. 포정부가 발표한 제3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21~2025년)에서 주거여건 개선 외에 장애인에 대한 조치를 찾아보기 어렵다. 주거여건 개선 외에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 예를 들어 장애인을 취약계층에 명시적으로 포함한다거나, 기후 변화가 장애인의 인권사항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대응 결정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 등의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Article 12.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법 앞의 동등한 인정)

• 현행 성년후견제도는 일부 법률행위를 제외하고는 재산과 신상에 관하여 여전히 피후견인의 법적 능력을 제한하거나 박탈하고 후견인이 이를 포괄하여 대리하도록 한다. 이는 대체의사결정제도에 해당한다. 대체의사결정제도인 성년후견제도는 CRPD 제12조의 조력자의사결정제도와는 양립 및 공존이 불가능하므로, 성년후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 피후견인에 대한 약 300여개의 결격조항은 CRPD 제12조 및 일반논평 제1호의 해석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삭제하되, 제3자의 재산 또는 신체 및 생명에 위해를 가할 현저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적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으로 직무 또는 직업 수행을 제한하는 방안 등 침해가 필요최소한도에 그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Article 13. Access to justice(사법에 대한 접근)

•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서 장애인이 가진 권리를 알려주는 것이므로 고지의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의 고지대상을 현행과 같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해서는 안 되고, 외관상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고려하여, 의무적으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모든 사람에게 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력의 내용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아가 장애여부 확인 및 조력에 대한 고지를 사법기관 뿐 아니라,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행정절차상 강제처분(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강제퇴거와 보호처분, 그 외 보호를 명목으로 한 수용 등)에서도 이러한 절차는 차별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공공기관으로 의무주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도 형사사법절차에서 행정절차와 사법절차 일반으로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 수화통역 등 편의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가능하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거나 위험요소로 인식케 하는 언론보도 및 사회적 시선과 사법조력에서 제외되는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 법무부는 효율적인 전담수사시스템 운영을 위해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과 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장애인 사법 접근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 중심의 장애이해 교육과 훈련, 전담부서 또는 팀 구성 등을 통한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에 있어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 또한 ‘경찰의 인권보호 규칙’에 장애인 정의의 접근성 조항을 명시하고 장애의 유형,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처리하는 관행을 구축해야 한다.

Article 14. Liberty and security of the person(신체의 자유 및 안전)

- OECD 회원국의 조현병 환자 평균 재원기간은 2016년 기준으로 50일인데 반해, 우리나라 평균 재원기간은 303일에 달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입원제도의 변화로 2017년 평균 재원기간이 215일로 감소하였으며, 8만 명이 넘었던 2013년에 비해 수가 줄었지만, 입원환자 수는 2016년 6만 9162명에서 2018년 4월 23일 기준으로 6만 6523명으로 큰 변화가 없다. 또한 선진국들은 입원병상을 줄이고 지역사회 치료로 전환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오히려 병상이 늘고 있다(정신병원 장기입원의 진단과 대안 정책간담회 자료집, 인권위, 2019).

- 강제입원 비율이 2005년 90.3%에서 2020년 37.1%로 꾸준히 감소해오고 있지만,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에 근거해 정신질환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동의입원을 강제입원 통계에서 제외한 수치다. 2021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질환자의 동의입원 제도의 퇴원결정 권한이 당사자가 아닌 가족에게 있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합법적 장기 입원절차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 시행 후 동의입원 비율은 2017년 16.2%, 2018년 19.8%, 2019년 21.2%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보호자 동의 없이 퇴원할 수 없는 점은 ‘당사자 의사 존중’이라는 동의입원의

입법 목적과 모순되며, 사실상 강제입원에 해당한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주장이다.

- 일부 수용시설은 돈벌이 관행으로 강제입원을 이용하고 가족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에 제기되고 있다.

-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를 개선하고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정신질환이 없는 발달장애인이 법무부 및 병원 내 발달장애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전문가들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 관련 전수 조사를 수행하고, 진료·감호 대상에서 발달장애인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Article 15. Freedom from torture o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 정신의료기관 모니터링에는 정신보건의료 인력 외에도 전문가(정신보건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교수 등), 환자 당사자, 지역사회주민, 정부관계자가 참여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익옹호 등의 문제해결 기능을 모두 갖춘 독립적인 지도감독 기구의 설치 및 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Article 16. Freedom from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 학대 예방정책으로 장애인 부모 및 가족 대상의 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장애인의 관계에서 유기 방임의 경우 학대행위자가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인 비율이 38.8%, 부모가 37.5%로 나타났다. 또한 신고의무자의 직군을 확대해야 한다. 신고의무자는 주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대받는 장애인을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 보호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전문가를 신고의무자 직군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의료사회복지사, 보건소 종사자 등 학대 사례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직군을 추가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 피해장애인 쉼터는 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와 응급상황의 긴급지원을 주 업무로 하고, 장기적인 사례 관리는 지역 내 전문적인 개입이 가능한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담당하여 쉼터 업무와 협력, 조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유관기관 간의 전문성을 살리고 업무 체계화가 필요하다. 피해장애인 쉼터는 세부유형(성인, 아동, 성별) 구분 없이 운영되고 있어 쉼터 내 이차적인 인권침해 우려되는 상황이다.

- 특히 장애아동과 노동현장에서 착취를 당한 지적장애인이 다시 가정이나 착취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경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학대 피해 장애인과 학대행위자의 관계, 경제적, 심리적 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무적 상담 교육 치료를 위한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처분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

Article 17. Protecting the integrity of the person(개인의 온전함 보호)

- 장애인복지시설 및 지역사회의 장애인권실태조사 항목에 강제불입 실시 여부를 포함시키고, 장애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장애인의 탈시설 자활 지원이 필요하다.

Article 18. Liberty of movement and nationality(이주 및 국적의 자유)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사리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법무부가 예로 드는 미국의 이민국적법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재산, 안전, 복지에 위협을 가하였거나, 가할 수 있는 자”로 비교적 그 범위가 구체적이다. 이는 장애를 이유로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이유로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다.

- 근로 중 산업재해로 장애가 발생한 외국인 등 장애인 등록과 지원이 시급한 외국인은 장애인 등록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나아가 난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이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정부에서 공공부조의 부담을 이유로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할 것이 요구된다. 장애인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중 장애 수당의 자격 조건을 갖춘 외국인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에 따른 비용 지출이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등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여부를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장애인 등록 및 그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은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대로 국적 기준이 아닌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장애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Article 19. 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 탈시설로드맵에 따르면 시설은 남겨진다. 24시간 전문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은 여전히 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시설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한다. 로드맵의 실질적 내용은 시설의 요구를 수렴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결론적으로, 시설의 개선과 기능 전환을 위해 시설을 지원하고, 시설이 중심이 되는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지원 로드맵인 것이다. 먼저,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심각성과 피해자 구제의 긴급성에 따라 지금 당장이라도 탈시설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를 로드맵에 반영해야 한다. 로드맵 추진기간과 무관하게 현재 실재하는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자 구제를 로드맵에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환경, 속도를 고려해 시기를 늦추더라도 시설 폐쇄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명확하게 표명되어야 한다. 현재는 '시설 입소 기준 강화, 시설의 소규모화 및 기능 전환

지원'을 위한 약속이 있을 뿐, 정책은 여전히 탈시설이 아닌 시설에 있다.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의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운동' 경험과 지혜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현재 로드맵 상에는 전달체계의 핵심인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지원과 관리 대상일 뿐이다.

- 시설이 탈시설 및 자립지원 전달체계의 주체가 되는 것은 곤란하다. 복지관처럼 이용시설로 전환할 수 있고, 지역사회와의 거리가 문제라면 연수 및 교육 시설로의 전환도 있다. 로드맵에 따라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시설은 지금과 다를 바 없으며, 정상적인 거주시설에겐 주거서비스 제공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시설 퇴소 장애인을 위한 주거유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능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체험홈, 그룹홈 등을 통해 이미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 통과로 로드맵의 추진방향과 방법의 개선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Article 20. Personal mobility(개인의 이동성)

- 장애인 및 장애인과 함께 근무하는 전문 직원에게 이동기술에 관한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정책,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 개인의 이동성 증진을 위한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에 대해, 정치적 이익과 이념적 편향에서 부정적 견해를 제기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인식제고 이슈와 연계해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Article 21. Freedom of expression and opin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 2016년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 및 점자법이 실효적으로 작동한다 하더라도 수어나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장애인 비중이 매우 적다는 관점에서 다양한 대체 의사소통 도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소통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공정보 및 서비스 주체들에게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 발달장애인의 방송 접근성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방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방송접근 보장 관련 고시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EBS가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지만, 지난 4년간 제작된 106편 중 7편에 불과하다.

Article 22. Respect for privacy(사생활의 존중)

- 서비스 최저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 장의 교체,

해당 시설의 폐쇄가 가능하나, 어느 기준을 어느 정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최소한 거주인의 외부와의 연락 방해나 허락 없는 금전 사용과 같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 하는 경우 특정 처벌이 반드시 부과되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선된 만큼, 정신요양시설에도 서비스 기준이 적용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 활동보조서비스 과정에서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사생활 침해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직무 교육 및 훈련 콘텐츠에 해당 인권이슈를 보다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Article 23. Respect for home and the family(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 장애아동을 둔 가정은 장애아동에게 특화된 양육지원서비스와 성인에게도 제공되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자가 장애아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나, 일정 소득 이상인 가정에서는 이용할 수 없고, 제공 기관이나 인력의 수가 부족하여 자격을 갖추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진다. 반면 활동지원서비스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장애아동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으나 서비스 내용은 성인에게 초점을 두고 있어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 결혼을 하면 실제로는 양육비 등으로 인하여 생활비용이 증가하는데 현행 제도에서 수급비가 가족을 중심으로 지급되면서, 2인 가족이 되면 각자 결혼하기 전에 받던 수급비보다 적은 액수를 받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들끼리 결혼을 하려면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며, 이는 장애인들의 결혼을 제약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Article 24. Education(교육)

- 통합교육의 대상은 특수교육대상이 아닌 비장애 아동도 통합교육 의 당사자다. 특수교육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통합학교에 특수교사들이 더 많이 배치되고, 편의시설이 갖추어 양질의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 장애인 편의시설의 수적인 확보만 아니라 장애인의 행동 특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물 설치 필요하고, 지체장애인 외에 시각 및 청각장애를 위한 시설도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운영 면에서 대학 내 편의시설의 설치율과 적합도 제고와 함께 실질적인 활용도 높일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 면에서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요구되고, 정부는 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을 토대로 각 학교 평가하여 편의시설 확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통합유치원과 유치원 특수학급을 확대 설치하는 것 외에 장애유아의 차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이 요구된다. 개정 방안으로는 의무교육 간주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유치원과 동일하게 특수교육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 장애아동 대상 폭력예방 정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제절차의 접근성, 신뢰성,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 구제절차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접근성을 제고하고, 무관용 대응을 통해 신뢰성과 효과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무관용 정책은 가해학생에게 사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보장하는 것이다.

Article 25. Health(건강)

• 상법이 개정되어 의사능력이 있는 장애인이 스스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었지만, 의사능력이라는 판단하기 어려운 요건 때문에 보험회사의 보험인수 거절관 행은 개선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타인의 생명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고, 단체 보험의 피보험자도 될 수 없다. 민사상으로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도 법정대 리인을 통한 법률행위 또는 신분행위가 가능하다. 그러나 상법 제732조는 대리권 행사를 모두 부정하고 있다.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10호)과 상충된다. ‘의사능력’에 기 반한 일률적인 보험가입 거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732조의 개정 및 해당 협약 제25조 (e)항 유보 철회가 필요한 상황이다.

• 유보조항 철회는 외교부에서 철회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의료접근 관련 법 실효성, 즉 주치의, 재활체육, 건강검진접근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 장애인화건강검진기관은 100여 개에 불과하다.

Article 26. 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가활 및 재활)

• 환경을 사람에게 맞추는 정책적 전환, 장애인 본인에 대한 케어 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지원과 이를 제약하는 법적인 장벽 제거 등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을 지는 국가책임제의 실효적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Article 27. Work and employment(근로 및 고용)

• 정신질환을 자격 취득 등의 결격사유로 하고 있는 법률들의 입법취지는 업무 수행능력의 부족이나 위험성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정신질환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과연 업무수행능력의 불충분이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에 따른 것인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따라서, 우선 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 정신질환을 결격사유로 하고 있는 법률들 대다수는, 공중의 위생, 보건 등 공 공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거나, 보육, 돌봄 등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는 분야에 집 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공공의 안전 등 사회공동체의 가치보호를 위해 관련 업종의 진입에 있어 엄격한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토록 하고 내재적인 위험가능성을 제거하려는 절차적 노력의 일환이라 할 것이어서, 법률에 자격 및 면허취득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자체를 문제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직업선택의 전제조건이 되는 자격 및 면허취득의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중대한 제약에 해당하므로, 자격제한이 적용되는 법령의 범 위는 최대한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 2017. 12. 29. 개정된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작업능력 평가를 실시 결과값이 70 미만인 경우에만 인가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종전 결과값 90 미만인 경우 인가승인을 하던 것과 비교하여 인가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하지만 보충급여제의 취지가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에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의 강화와는 무관하다. 장애인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시급히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 의 폐지 및 보충급여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최저임금의 상승 등 으로 인해 최저임금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국가 재정상 어렵다면, 최소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하한선 도입 및 업무능력에 비례하는 급여 책정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최소한의 급여 수준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고용과 동시에 훈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고용과 훈련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즉, 훈련기간을 제한하고, 훈련기간 종료시에는 일반고용으로 전이되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 정부가 답변한 바와 같이, 중증장애인 장애 유형별 특화훈련,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여성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적합 직무 발굴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 더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중고령 여성 장애인의 취업 지원에 대한 대책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의 고령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고령 장애인들은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적 차별에 놓여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 특화된 교육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중고령 여성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취업 연계서비스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 장애인 고용 관련 통계 자료는 충실한 편이며, 고용노동부 정책자 료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통계자료실,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 각종 통계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수월한 편이다. 통계의 정확성 및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각 통계 수치에는 설문 대상 및 산출 근거를 명확히 표기해야 할 것이다.

Article 28. Adequate standard of living and social protection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 장애인 추가비용을 장애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가구는 비장애인 가구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선이 상승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는 생계급여에 장애인 추가비용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 또한,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에 장애 관련 추가 비용 전체를 반영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장애인 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장애인 추가비용을 제한 금액이 될 것이다. 또한 생계급여와 관련해서도 부양의무자 요건이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rticle 29. Participation in political and public life(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성할당제에 대한 내용만 규정할 뿐(법 제47조 제3항),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비례대표 추천 의무화 조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 법규정에서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제도는 장애인 추천보조금 제도 뿐이다.

-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6헌마626 결정 이후, 공직선거법에는 장애인 후보자 예비후보자에게 활동보조인을 선거사무원수에 제외하는 조항이 신설 되었을 뿐, 오히려 장애인 피선거권 차별은 여전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장애인 후보자와 비장애인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법 제93조 제1항). 유권자와 직접적인 대면을 통한 선거운동 방식이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정확한 의사전달이 어려운 언어장애를 가진 후보자는 비장애인 후보자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언어장애를 가진 후보자에게 의 사전담을 도와줄 보조자로서 선거사무원을 추가로 1~2명 허용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상 가능한 인채물의 법정 상한을 늘려주는 등 언어를 대체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더 많이 허용되어야 한다.

- 2011년 개정 민법 부칙(법률 제10429호)에서는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대하여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고 그 기간을 5년 유예하였고(부칙 제2조), 유예된 5년의 기간 동안은 피성년후견인 역시 선거권이 박탈된다(부칙 제3조). 이에 따라 5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8. 6. 30.자로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모두 실효되었다. 2018. 7. 1.자로 행위능력이 회복된 금치산(한정치산)자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 및 피선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공직선거법 제18조는 개정되지 않은 채 여전히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선거권이 없다. 무엇보다 피성년후견인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면 출마에 수반되는 여러 부수적인 법률행위를 스스로 하기 어려울 것이다.

Article 30. Participation in cultural life, recreation, leisure and sport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 문화여가, 관광, 레크리에이션 등에서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함에서 있어 휠체어 사용자

위주로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일정 성과와 진보가 있었다. 상대적으로 시·청각 장애인의 접근성은 소외된 상태이며, 물리적 접근성에 비해 정보접근성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접근성 개선과 연계해 시·청각 장애인의 관련 정보 접근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특정주체에 관한 조항

Article 6. Women with disabilities(장애여성)

- 여성장애인정책에 관하여 접근할 때, “여성정책”이라는 점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답 변 중 많은 부분이 ‘발달장애인 전체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등, “여성”장애인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도 장애인 전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성인지 예산의 대상 사업으로 포함된 예가 많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한국의 여성장애인 관련 서비스는 더욱 성인지적이 되어야 할 필요가 높아 보인다. 캐나다와 호주처럼 여성장애인정책 자체를 장애정책으로보다 여성정책으로 우선 분류하여 개발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한 여성장애인 정책이 여성장애인 개인을 타깃으로 하는 사업에서 여성장애인이 속해 있는 가족 전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현재 정부는 장애인 확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직군 확대, 벌칙조항 신설, 장애인식교육 실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등의 이행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이행현황 및 이행계획 모두, “장애여성”에 특화 된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장애여성이 겪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폭력의유형과 사례 모두 여성이라는 특성에서 기인하는 점이 큰 만큼, 장애여성에 특화된 이행계획이 필요하다.

- 뇌전증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주의의 권유에 의해 인공임신 중절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방지 및 지원 대책을 내놔야 한다. 또한 산후조리에 대한 지원책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의 임신 전, 임신 중, 출산 시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는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지원책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필요를 고려하여, 임신 및 출산 관련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 출산에 못지않게 그 이후의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 양육비,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우선순위로 지적하고 있으므로, 교육비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장애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불리와 장애 편견과 배제 등의 문제도 크게 지적되므로, 이와 더불어 심 리 상담지원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를 유형과 정도의 측면에서 세세하게 고려하고, 특성을 반영한 지원 제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 장애여성 단체는 장애인 여성의 임신·출산·육아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산부인과와 공공산후조리원의 전국적 확충, 출산지원금 규모(22년부터 200만원)의 현실화,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여성 장애인 불임 실태조사 전국 실시, 장애인 여성의 평생 건강권 확보를 위한 무료 건강검진 시스템 구축,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수립, 폭력 피해 장애여성 보호를 위한 전용 쉼터 마련, 장기거주를 위한 공동생활가정 및 체험가정을 확대와 퇴원 후 자립지원 방안을 마련, 양성평등위원회의 장애여성을 대표하는 위원 포함, 장애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장애여성 의무고용제 도입, 장애여성 역량강화, 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여성장애인 전문직 개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Article 7. Children with disabilities(장애아동)

• 장애 아동들은 놀 권리, 휴식 권리, 여가 권리 향유에 있어 제약이 많다. 지역사회의 놀이터는 접근성이 좋지 않고 어린이 친화적이지도 않다. 더욱이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공간은 대부분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공간과 분리되어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장애아동을 주요 이용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어린이를 포용하는 놀이터 조성이 어렵다.

• 장애아동이 시설에서 놀 수 있는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 장애아동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놀이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 가정의 지역사회 자립과 연계해 세밀하게 정책이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

• 서비스 총량의 확대와 더불어 현행 장애등급에 의한 서비스 대상자 선정에서 벗어나 장애아동의 의료적, 기능적 측면뿐 아니라 생활환경적 요인과 가족 전체적 필요요구에 근거하여 서비스가 결정되는 새로운 판정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장애아동 및 가족지원 서비스가 장애아동의 장애 유형별 특성, 생애 주기적 특성, 다양한 가족 환경 등을 반영하여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그 내용이나 방식에 있어서도 보다 다양화 되고 유연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특히 장애아동이 부모나 의료진의 결정에 의해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슷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받고, 그에 기반하여 스스로 의사표현을 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학대에 노출된 장애 아동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정부는 2018년 이후 학대받는 장애아동 관련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통계와 관련 자료는 ‘장애인학대’와 ‘아동학대’로 중복되거나 구분되어 있다. 국가는 장애아동 관점에서 기존의 학대아동 대응체계를 재검토하고, 장애아동을 포함한 학대아동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하며, 학대피해아동 지원체계와 학대아동 지원체계 간의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 또한, 아동학대 수사·판단의 컨트롤타워인 아동학대 사건 전담 지자체 공무원과 장애아동 학대 사건 전담 직원의 장애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아동학대 통계 내에서 학대받는 장애아동에 대한 세분화된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비판적 견해 : 특정의무에 관한 조항

Article 31. Statistics and data collection(통계와 자료수집)

-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성·보급·이용되어야 하고, 정확성 시의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통계법 제2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현행 통계조사의 실태를 볼 때, 장애인의 삶 전반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되는 통계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두 개의 통계조사에 워싱턴 그룹의 방법론을 도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승인통계 전반에 있어 워싱턴그룹의 방법론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행 통계법에는 장애 통계와 관련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장애 통계와 관련한 국가의 의무와 지향점을 규정한 조문을 두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Article 32. International cooperation(국제협력)

- 우선 인천전략과 SDGs의 국내 이행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SDGs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인천전략, SDGs, CRPD가 모두 연동된다면, 장애인 권리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행 상황 평가, 감독에도 유리할 것이다. 한편 2021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중점 지원분야로 장애를 적극 고려할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Article 33. National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국내 이행 및 감독)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장애인정책조정실무, 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책임관과 업무협력 시스템 구축,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 원회의 분과위원회 업무지원, 중앙부처 간 정책조정안 마련, 정책이행 모니터링 조직 설치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립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 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CRPD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원칙이나

방향에서부터 CRPD를 준용하며, 세부 계획도 협약 조항과 연동되어야 한다. 2023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원칙이나 방향의 설정 단계, 세부계획 단 위까지 CRPD와 연동시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이행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CRPD의 이행과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 CRPD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전담직원을 두고 관계기관의 이행현황을 취합하고, 정리해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차별이나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조사, 구제조치 이행 권고 또는 정책 권고 과정에서 CRPD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CRPD 모니터링은 국가인권위원회라는 하나의 ‘기구’를 통해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CRPD 모니터링 ‘체계’(framework)를 구축해야 한다.

- 일반논평에서는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에는 국가 인권 기관, 특별 위원회, 의회 및 지방 자치 단체뿐만 아니라 지역,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서로 다른 의사결정 기관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포함”시켜야 하고, “장애 관련 법률, 정책, 전략 및 조치 계획을 포함한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과 정책 작성에 있어, 그들의 대표 조직을 통하여 장애인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DPO(장애인 당사자 단체), NGO를 통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모니터링 요원 중 장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애인을 참여시킬 때는 장애의 유형, 연령, 성별, 인종, 직업 등 다양한 배경이 반영되어야 한다. 나아가 내용면에서도 장애인의 목소리와 경험이 반영되어야 한다.

- 무엇보다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및 인권침해 관련 시정권고, 회신, 회신 사항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등 전 과정에서 일상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속 활동

시민사회의 제네바 활동 목적은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국가보고서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한국 보고서 담당 위원에게 설명하고 관련된 내용을 최종견해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일반의무), 제33조(국내적 이행 및 감독), 제36조(보고서의 검토) 및 인천전략 목표9(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이행과 협약과 국내법의 조화촉진)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한 장애인단체의 역량강화도 부수적으로 기대되는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와 한국 장애인단체와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장애인권리협약 실질적 이행을 위한 상호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는 향후 5년 내의 한국정부의 장애인 정책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귀국 후에도 참관 준비 및 참여 과정에서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이를 국내 장애인 단체와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영화평



투쟁하는 현실, 들여다보는 영화
또는
예술가 발달장애인들의 지나온 시간
서동일 감독 <니얼굴>, 정관조 감독 <녹턴>

투쟁하는 현실, 들여다보는 영화

또는

예술가 발달장애인들의 지나온 시간
서동일 감독 <니얼굴>, 정관조 감독 <녹턴>

2022년 7월과 8월은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주인공인 독립영화가 연이어 극장개봉을 했으니깐요. 극장가 뿐 아니라 안방극장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에 정은혜 작가가 출연해서 화제가 되더니 지금은 온통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뜨거움을 넘어 처절합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범정부 차원의 발달장애인 종합 지원 대책 수립, 기존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조정과 개편, 발달장애 24시간 돌봄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전국 곳곳에 ‘죽음을 강요당한 발달·중증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분향소’를 차렸습니니다.

7월과 8월에 개봉한 <니얼굴>과 <녹턴>에는 투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저 일상이 나올 뿐이죠. 하지만 그 일상 덕분에 왜 저 부모님들이 분향소를 차리고 그 앞을 지키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편 한 편 살펴볼까요?

갈 데 없던 은혜씨가 찾아낸 길

tvN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다운증후군이 있는 정은혜 작가가 출연해서 한동안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운증후군을 처음 봤어요. 그게 잘못됐다면 미안해요.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교, 집 어디에서도 배운 적 없어요.”

극중 정준(김우빈)의 말처럼 일상생활에서 발달장애인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시청자들 역시 놀랐을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가끔 등장했지만 TV드라마에서 발달장애인 배우가 등장한 경우는 최초였으니까요. 그리고 때마침 정은혜 작가를 주인공으로 하는 다큐멘터리가 개봉되었습니다. 6월 23일에 개봉한 서동일 감독의 <니얼굴>에는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잠깐 얼굴을 비쳤던 정은혜 작가의 20대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이 촘촘히 담겨 있습니다.

영화 안에서 정은혜 작가는 은혜씨로 불립니다. 영화가 시작하면 갈 데도, 할 일도 없는 26살의 은혜씨가 등장합니다. 엄마가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미술수업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던 은혜씨는 어느 날, 엄마에게 말합니다.

“나도 그림을 그리고 싶어”

영화가 중반쯤 전개되었을 때 은혜 씨의 엄마이자 만화가인 장차현실씨는 그 순간을 회상하며 “그동안 은혜를 장애인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기대를 안 했던” 자신을 반성했다고 고백합니다.

은혜 씨의 엄마 장차현실 씨나 가족인 서동일 감독은 구태여 도움 준 일을 숨기지 않습니다. 문호리 리버마켓에 갈 때면 같이 짐을 나르고 좌판을 같이 꾸밈니다. 손님이 오면 은혜씨가 쫓기지

않고 편안하게 그릴 수 있도록 사진 찍는 일은 엄마 장차현실 씨의 몫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은혜씨가 그린 그림에 대해 조언을 하고 가끔은 이미 그린 그림을 지우기도 합니다. 그 때마다 은혜씨는 입이 뺨발이나 나온 채로 툭툭거리지요.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발달장애인들은 천재로, 혹은 장애 대신에 뛰어난 재능을 부여받은 존재로 그려집니다. <니얼굴>이 반가운 이유는 은혜씨가 노력형 인간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긴 세월동안 꾸준히 촬영해온 서동일 감독 덕분에 영화 안에는 은혜씨 그림의 변화와 발전이 잘 담겨있습니다. 엄마의 도움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은혜씨가 엄마의 조언을 고분고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종이에 인물들의 대략적인 위치를 잡고서 조금씩 채워가는 것이 보통의 화법이라면 은혜씨는 부분부터 세밀하게 그려나갑니다. 엄마 장차현실 씨가 그림을 고쳐주는 장면이 몇 번 나오는데 그 때마다 툭툭거리며 항변하는 은혜씨의 모습에 절로 웃음이 납니다.

가족들의 희생을 딛고 걸어온 길



<녹턴>은 자폐인 음악청년 은성호 씨와 동생 은건기 씨 그리고 엄마 손민서 씨의 노력과 긴장, 갈등을 생생하게 그려낸 영화입니다. 영화 초반부에 엄마의 관심을 목말라하던 고등학생 건기 씨는 영화가 끝날 즈음엔 형 은성호 씨의 보호자로 변해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음악인의 성장영화’라고 하기에는 동생 건기 씨의 비중이 참 큼니다. 건기 씨가 보는 가족사는 이렇습니다.

“엄마가 나도 버리고 아빠도 버리고 다 버리고 엄마 인생도 버리고 형한테 올인했으니까 그래, 그거 끝까지 가보고 그게 끝까지 갔을 때 그게 잘 됐으며 좋겠어”

형제는 같이 음악을 시작했지만 건기 씨는 중도에 그만 둡니다. 형 성호 씨보다 재능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영화 제목이기도 한 ‘녹턴’은 영화 속에서 여러 번 흘러나옵니다. 민서 씨는 건기 씨에게 자기 제삿날마다 들려달라고 할 정도로 ‘녹턴’을 좋아합니다. 건기 씨의 연주를 들으며 민서 씨는 혼잣말을 합니다. “성호가 할 때에는 이 느낌이 안 나”



다쳐서 병원에 누워있는 건기 씨에게 “형 지키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네가 지켜야지”라고 말하는 민서 씨의 편애는 너무 심하다 싶지만 현실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지하철을 타면 옆 자리 사람의 휴대전화 화면을 대놓고 들여다보고 조금만 불편해도 돌발행동을 하는 성호 씨를 엄마 민서 씨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건기 씨는 자주 혼자입니다. 학교 담벼락 앞에 쭈그려앉은 채 악보를 보던 건기 씨 모습은 가슴을



쫓겨하게 합니다. 그날은 건기 씨의 콩쿨이었고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엄마에게 연주하다가 땀 뻘뻘 투정을 부린 직후에 건기 씨는 그렇게 쭈그려 앉아있었던 겁니다.

“피아노, 클라리넷, 바이올린 다 하면서…… 엄마가 다 해줘서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컵 라면에 물 부어먹을 줄도 몰라요. 내 입장에서는 눈꼴 시리죠”라고 말하던 고등학생은 “형은 엄마가 없으면 안되지만 나는 엄마가 없어도 되거든”이라고 말하는 청년이 됩니다. 형 성호 씨가 차근차근 성장해가며 자신의 음악세계를 넓히는 동안 건기 씨는 학교를 그만 두고 휴대전화 판매 일을

하거나 여행 가이드 일을 합니다. “서른 살 되기 전의 실패는 경험”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사업들이 순조로운 것 같지는 않지만 일찍부터 혼자가 되는 법을 배운 탓인지 텅텅합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에는 놀랄 만큼 감동적인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 벅찬 감동이라 깊은 숨을 쉬고 있을 때 푹 끊고 엔딩 크레딧을 올리는 이 영화의 태도는 참 멋집니다.



영화에 배어있는 장애인 가정의 현실

은혜씨도 성호씨도 성공한 장애인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가지고 있고 그 분야에서 타인의 인정까지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물론 은혜씨의 가정과 성호씨의 가정은 많이 다릅니다. 은혜씨의 엄마가 지켜보는 태도였다면 성호씨의 엄마는 잡아끄는 역할을 했습니다. 은혜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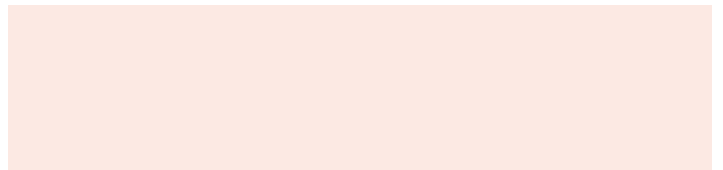
엄마는 사는 지역의 장애인부모모임 대표로 활동하면서 삭발까지 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성호씨의 엄마는 투쟁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성호씨를 씻기고 먹이고 입히면서 음악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영화는 성인이 되고 나면 발달장애인은 어디로 가야하는지, 24시간 오직 자식 돌보는 일만 하는 엄마가 세상을 떠나면 성호씨는 어떻게 될건지 관객들을 궁금하게 하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예술가로서의 뛰어난 성취 만큼이나 그 성취를 이루는 과정에서 주인공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호 씨 가정의 경우에는 엄마 뿐 아니라 동생 건기 씨까지 성호 씨의 성취를 위해 일정 정도 포기한 것들이 있음을 담담히 보여줍니다.

2022년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삭발을 하고 분향소를 차립니다. 그리고 극장가는 그 치열한 움직임의 이유를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영화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현실과 영화를 가로지르며 함께 만나보기를 권합니다.



문의:진진 02-3672-0181 / 시네마달 02-337-2135





포럼은
지금

+



(사)경남장애인인권포럼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포럼은 지금

(사)경남장애인인권포럼

전문강사양성교육



(사)경남장애인인권포럼(이하 경남포럼)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장애인식개선(인권) 전문강사양성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론교육 20시간, 시연을 위한 선배강사의 1:1 맞춤 교육, 자문위원들의 피드백을 받는 시연까지 마무리 하였고, 12월에 수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목적은 사회적 요구에 따른 장애인식개선(인권) 전문강사의 지속적인 배출과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질적 수준 향상이다. 전문강사양성교육으로 매년 인적자원이 배출됨에 따라 경남포럼에서는 더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경남도 내 강사 수요에 따라 공급하고 있다.

2022년 전문강사양성교육 교육생 모집정원은 12명이었으나 16명이 지원하였고, 14명이 교육생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다년간의 전문강사양성교육 과정이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었고, 경남도 내 장애인인권과 인식개선의 사회 파급력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2021년 경남포럼에서 전문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경남도 내 ○○대학교 교수가 장애인식개선 확대를 위하여 ○○국립대학교 대학원 2022년도 하반기 교육 과정에 유니버설디자인 강좌를 개설하여 수업을 준비 하고 있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20대 대선, 제주지역 투표소 모니터링 결과발표



및 공직선거법과 그 규칙에 따라 진행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모니터링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 3월 15일 투표소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모니터링은 사전 투표소와 당일 투표소 50곳을 대상으로 장애인활동가와 직원이 투표를 하며 편의제공을 확인하고 투표 사무원과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장애인 유권자 등 투표편의 안내자료에 나와있는 투표편의

재활용도움센터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발표



하기 위해 재활용도움센터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례를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과제를 남겼다.

지난 6월 15일 재활용도움센터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도내 재활용도움센터 93개소 중 9개를 제외한 84개소에 경사로가 조성돼 있었으나, 대부분 쓰레기 수거함이 모인 쓰레기를 외부로 옮기는 작업을 위한 용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도움센터는 일반적인 건축물로 보거나 그 시설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만큼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가 아닌 것으로 기본적인 접근성을 확보

혐오표현방지 및 피해자지원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을 포함한 12개 단체(‘혐오와 차별은 반대하는 제주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월 29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에 지지하면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혐오와 차별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 시대에 앞장서서 혐오 표현 및 차별 금지에 관한 사회적 규정을 최초로 법제화한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심사에서는 심사가 보류되면서 조례제정은 무산되었다.

2022 제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 출범 및 정책요구안 전달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을 포함한 제주지역 6개단체가 모여 2022 제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를 출범하고 도지사 및 교육감후보에게 장애인정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연대 출범식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로 욕구와 필요성이 담긴 정책을 요구하고 공약으로 만들어지는 정책선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연대에서는 장애인복지정책(12대 정책 50개

과제), 장애인교육정책(8대 정책 20개 과제)을 각 후보자에게 전달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교육감 후보자 초청 장애인 정책설명회 개최



2022 제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는 지난 5월 24일 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를 초청해 장애인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장애인단체 종사자,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복지 및 교육정책 요구안에 대한 답변과 개별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